

장애인의 건강을 잇다  
희망을 보다

202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통합안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대학교병원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에 지정된 기관으로서,  
도내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가 저희와 손을 맞잡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06 2026년 기준중위소득
- 07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 07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01 장애인 등록

- 08 장애인 등록
- 23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24 장애정도 심사 관련 비용

## 02 장애소아청소년

- 29 경제적 지원
- 32 돌봄 지원
- 36 교육 지원
- 44 의료·재활 서비스

## 03 여성장애인

- 49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5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51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52 도내 임신·출산 관련기관

제주지역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안내서 내용의 출처가 된 자료들은 보건복지부 등의 2025년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04 보건·의료편

- 57 의료비 지원
- 65 재활서비스 지원
- 69 보조기기 지원
- 84 장애인 건강관리

## 05 복지편

- 95 경제적 지원
- 99 일자리 지원
- 116 교육 지원
- 122 주거지원
- 129 자립지원
- 132 일상생활지원
- 154 세제혜택
- 161 요금 감면
- 168 응급안전, 긴급돌봄
- 17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06 부록

- 181 도내 장애유관기관 및 특수학급 현황
- 189 주요기관 연락처
- 194 주요기관 연락처 - 장애인
- 199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장애인의 건강을 잇다  
희망을 보다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금액
1인	2,564,238
2인	4,199,292
3인	5,359,036
4인	6,494,738
5인	7,556,719
6인	8,555,952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1인	1,282,119	1,230,834	1,025,695	820,556
2인	2,099,646	2,015,660	1,679,717	1,343,773
3인	2,679,518	2,572,337	2,143,614	1,714,892
4인	3,247,369	3,117,474	2,597,895	2,078,316
5인	3,778,360	3,627,225	3,022,688	2,418,150
6인	4,277,976	4,106,857	3,422,381	2,737,905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1종	입원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500원	
2종	입원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	연간 80만원
		10%	무료	10%	무료		
	외래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500원	
		1,000원	250원	15%	무료		

※ 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만원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

### 1-1. 장애인등록제도\_장애인등록제도 개요

**목적**

- 장애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등록하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
- 또한 제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등록 전에 장애 해당 여부 및 장애 정도에 대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치도록 진행
  - 장애인등록이 된 이후에도 재판정을 통해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등록 내용 변경 또는 등록 취소 등 적절한 사후관리를 지속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등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 장애정도 정밀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제공 가능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제10조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뢰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 1-2. 장애인등록\_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 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척추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척추의 내분비기능 이상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1-3.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 유형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종전4급	종전5급	종전6급
1. 지체장애	상지절단	○	○	○	○	○	○
	하지절단	○	○	○	○	○	○
	상지관절	○	○	○	○	○	○
	하지관절	○	○	○	○	○	○
	상지기능	○	○	○	○	○	○
	하지기능	○	○	○	○	○	○
	척추장애		○	○	○	○	○
	변형장애					○	○
2. 뇌병변장애		○	○	○	○	○	○
3. 시각장애		○	○	○	○	○	○
4. 청각장애	청력		○	○	○	○	○
	평형			○	○	○	
5. 언어장애			○	○			
6. 신장장애		○			○		
7. 심장장애	○	○	○		○		
8. 호흡기장애	○	○	○		○		
9. 간장애	○	○	○		○		
10. 안면장애		○	○	○	○		
11. 장루·요루장애		○	○	○	○		
12. 뇌전증장애		○	○	○	○		
13. 지적장애	○	○	○				
14. 자폐성장애	○	○	○				
15. 정신장애	○	○	○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 1-4. 장애인등록 절차



### 1-5.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이 가능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지체장애	상지 (절단, 관절, 기능)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기능)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cm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척추가 흰(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cm 이하, 여자 140cm 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젤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시각장애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야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경보임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경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5. 언어장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더듬[SSI :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 41%ile 이상] /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 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6.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7. 정신장애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9.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10. 심장장애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
11. 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늑막루가 있는 경우
	폐를 이식받은 경우
12. 간장애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Child-Pugh 평가 정도 B0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간을 이식받은 경우
13.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은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14. 장루·요루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15. 뇌전증장애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16. 취장장애	취장을 이식받은 사람

1-6. 장애유형별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요약)

장애유형	구비서류(요약)	
지체	절단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관절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
	기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근전도검사결과지,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
	척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X-ray사진, 수술기록지
	변형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X-ray사진
뇌병변	뇌졸중 등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뇌영상자료(CT, MRI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뇌성마비 등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파킨슨질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호엔아척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시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전안부 사진, 칼라 안저사진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청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순음청력검사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평형기능장애의 경우 검사결과지(안진검사 등), 진료기록지(1년)	
언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6개월 이상) *후두전적출술의 경우 진료기록지 중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	
지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적장애인 경우 뇌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6개월) 제출	
자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능지수, 자폐척도),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	
정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질환에 따른 검사결과지,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신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투석기록지(최근 3개월 이상)	
심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판정기준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호흡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폐기능검사결과지 등, 진료기록지(최근 1년)	
간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간기능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 1년)	
안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칼라사진(귀가 보이는 정면, 좌/우측), 진료기록지(6개월)	
장루·요루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요역동학검사 등(심한 배뇨장애의 경우)	
뇌전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2년, 소아의 경우 질환에 따라 1년)	
혜장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6개월 이상)	

1-7.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를 이식받은 사람. 단,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기관절개관 및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혜장장애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혜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거나 혜장을 이식받은 사람.

1-8.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신장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 전문의-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뇨장애에 한함) 전문의
체장장애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체장이식의 경우는 체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1-9. 장애인등록 신청

####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
- 대리신청
  -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임의대리인)의 대리신청 가능
  - ①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또는 그 사본) 첨부 필요
  - ②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 법정대리인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또는 그 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결정문 등)
-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내용

- 신규 신청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신청하여 장애 심사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 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의무 재판정
  - 종전 장애정도 심사에서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지자체는 해당 장애인에게 재판정신청을 안내하고 재판정 받도록 함)
- 직권 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심사사유가 기태(감사 등, 허위·부정 등록 확인)인 경우
- 서비스 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심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 조정 재판정

- 등록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지체장애가 동일부위(같은 측의 팔·다리 등)에 있는 경우 그 유형과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조정으로 신청  
예시) 오른쪽 다리에 관절장애가 있는 자가 같은 쪽 다리에 기능장애를 신청하는 경우
  - ※ 등록장애인이 기존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신청에 해당하나, 2000년 이전 지체장애(뇌병원 원인)로 등록된 경우 동일부위의 뇌병변장애로 조정 신청 가능

####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 관할 주민센터에 결과 통보
  - ▶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 결과 통보 ▶ 장애인증명서 및 등록증 교부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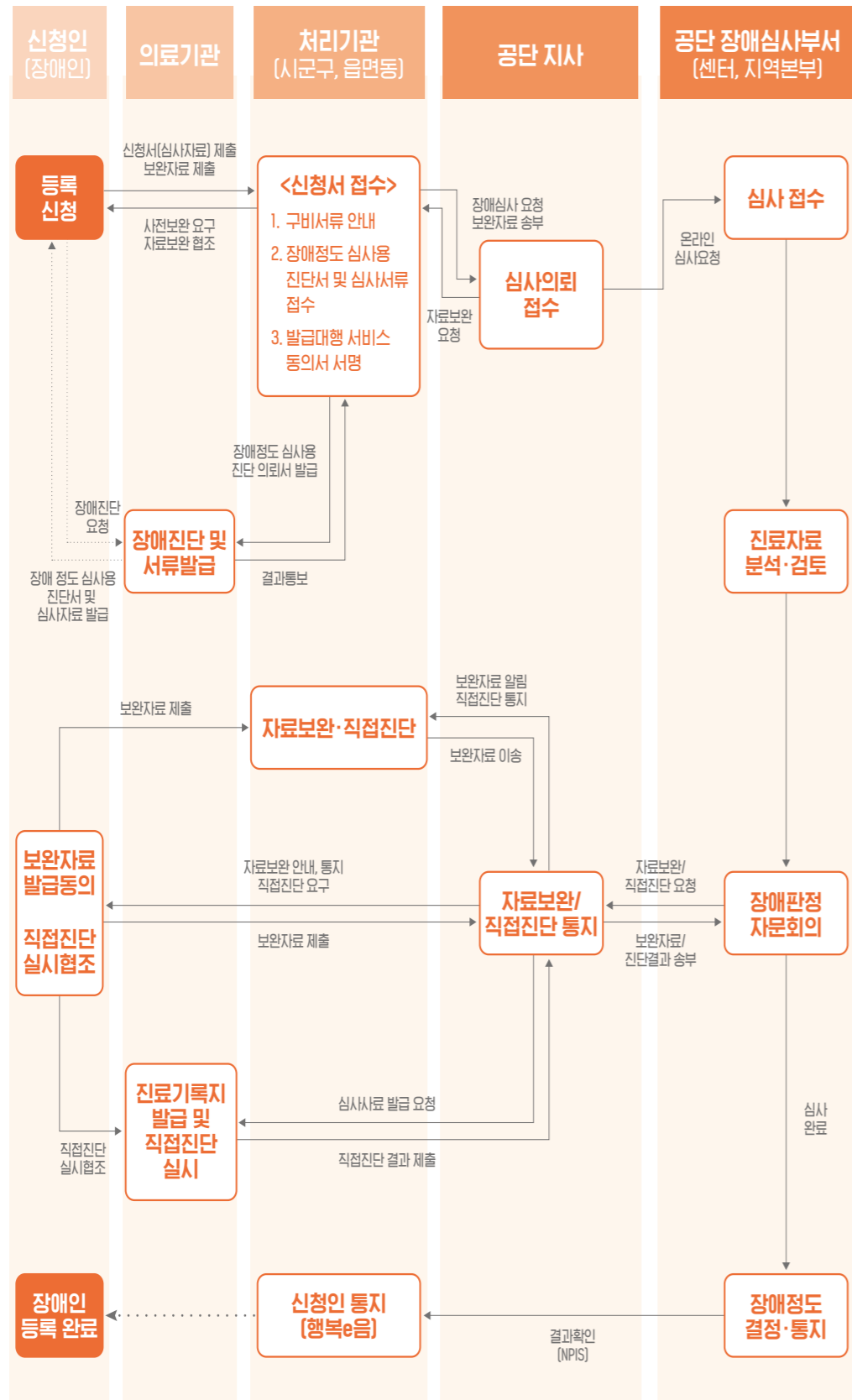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 장애인 등록

## 1. 장애인 등록



### 1-10.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 대상

- 장애정도 상향을 희망하는 장애인
- 의무적 재진단(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등록장애인
- 특정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 장애정도심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 공무원 직권에 의해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

#### 내용

- 장애정도 상향을 희망하는 장애인
  - 장애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 상승(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정도 하락(심한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 미해당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장애정도와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이 가능함.
- 의무적 재진단(재판정)기한이 도래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표)참조
- 특정서비스 신청에 의한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필요
- 공무원 직권에 의해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
  - 장기이식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부정등록 신고 시
    - ※ 장기이식(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수술 시행 후 장애인 본인이 장애정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

#### 방법

- 장애정도 상향을 희망하는 장애인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에 따른 장애심사처리 방법과 동일함
    -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장애정도판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기간 도래로 인한 재진단(재판정)
  - 장애유형별로 재판정 시기가 다르며, 재진단(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구비서류 제출
- 특정서비스신청에 의한 재판정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 장애 정도 재심사로 지금의 장애 정도가 하락되는 경우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 장애인 등록

## 1. 장애인 등록

###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b>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b>
지체(변형) 장애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b>2년 후 재판정</b>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b>2년 후 재판정</b>
뇌병변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b>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b>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b>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b>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b>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b>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b>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b>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b>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b>
청각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 재판정 난청 유형별 재판정 예외사항 있음
안면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시점 재판정
취장장애	최초 판정후 매2년마다 재판정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판정 받은 경우 재판정 제외 취장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재판정 제외

# 장애인 등록

##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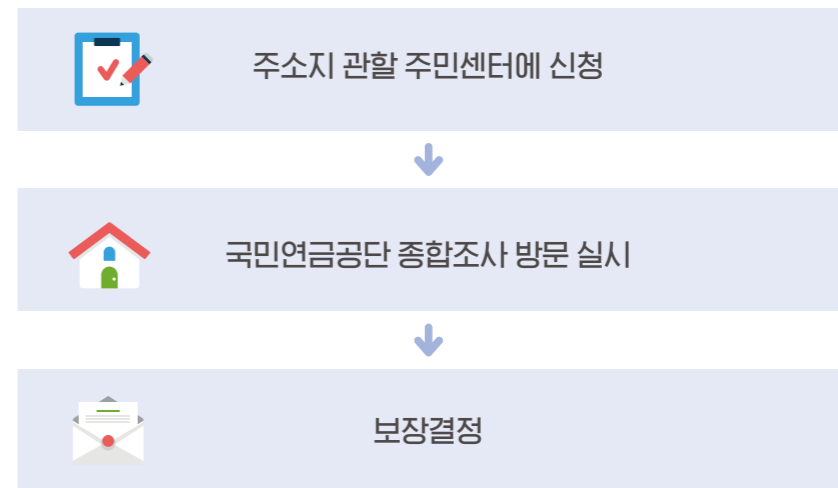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조사의 구성	내용
일반사항	• 신청인의 기본 인적사항, 신청 서비스 유형, 장애 유형, 장애정도, 가족상황, 주요문제 등을 조사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환경 파악
서비스필요도 평가	•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 등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를 계량적으로 평가
욕구조사	• 서비스 이용현황, 희망하는 서비스 조사, 공공·민간서비스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시 활용

#### • 종합조사 후 적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 일상생활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방법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 3-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내용**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지원 대상인 경우 영수증 제시 요청하여 금액 확인 후 지급
- 방법**
-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경우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점에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음
  - 장애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공무원 직권 신청  
- 지원대상자의 관할 주민센터에 바로 신청, 별도 서류 없음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 3-2.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내용**
- 지원액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0만원 범위 내에서 CD발급비 지원 가능
- | 재판정구분   | 지원대상 및 기준   |
|---|---|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초과 : 10만원<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li> </ul>                      |
|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초과 : 10만원<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li> </ul>             |
|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초과 : 10만원<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li> </ul> |
| 직권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li> <li>•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초과 : 10만원<br/>-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 : 검사비 총액</li> </ul> |
- 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 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 02

## 장애소아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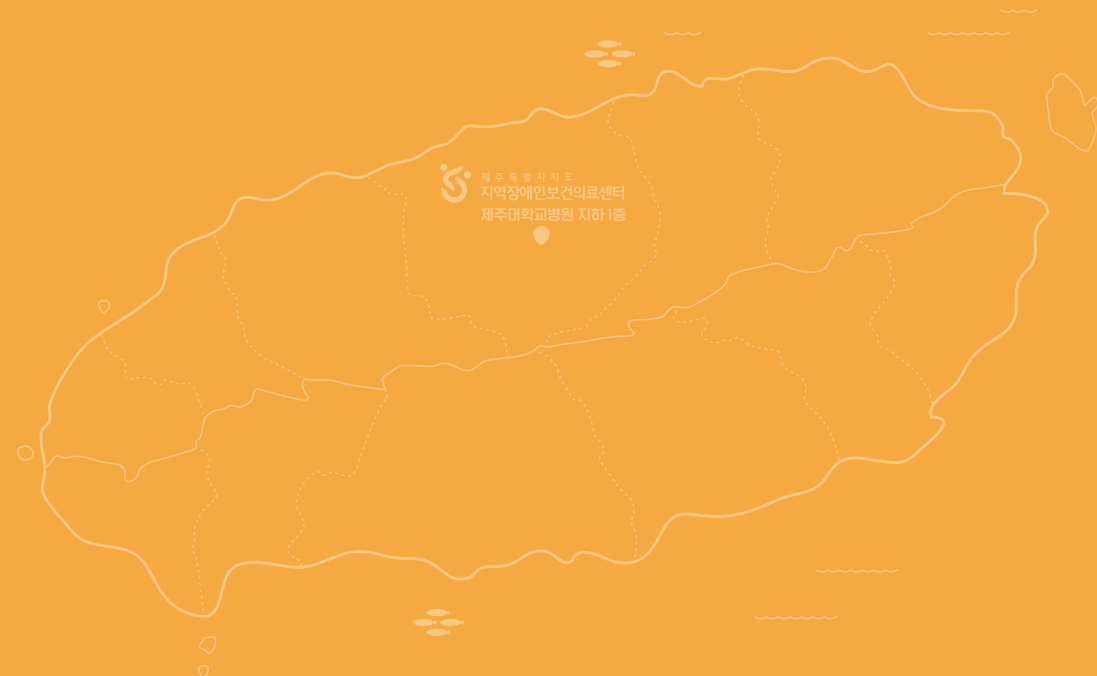
ECONOMIC  
경제적 지원



## 1 장애 아동 수당

-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내용
 

장애 아동 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중증 9만원	경증 3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 방법
  - 전국 읍·면·동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 접수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생계·의료 수급자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2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결과 통지서 제출
  - [예외]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 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 특수교육 대상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시 :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지원 가능(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

○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587,000	587,000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3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내용
  - 중증장애아동 : 월 721,000원
  - 경증장애아동 : 월 634,000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4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내용
  - 취학전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지원(10~2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CARE SUPPORT  
돌봄 지원



##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120%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 2 언어발달지원

- 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제공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월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 월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3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 대상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함(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8136
- 자료 출처
  - 복지포털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4 어린이집 우선 입소 순위

- 내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 기타 우선순위 목록은 출처 자료 참고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자료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교육 지원



###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

○ 진로 설계

서비스명	대상	기간	내용
직업상담	장애청소년 (중, 고등학생, 전공과학생)	연중	직업재활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보수집, 재할 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
직업평가	장애청소년 (중, 고등학생, 전공과학생)	연중	장애학생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능력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적응행동평가, 흥미평가,작업표본평가 등을 진행
개별화직업 재활계획수립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받은 장애청소년	연중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받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평가기준등을 수립
사례관리 및 회의	센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청소년	연중	복합적 문제를 가진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 및 재활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서비스 적격성 결정, 서비스제공, 취업알선 적합성 분석, 취업 후 문제행동 등에 대한 회의진행

○ 직업능력  
강화훈련

서비스명	대상	기간	내용
진로직업 탐색교육	센터서비스 이용 장애청소년	5월~10월	장애학생이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 지식, 소양 등을 함양시켜 직업인으로서 준비하는 과정
직무체험교육	고등학교 1,2학년	5월~12월	도내 사업체 방문을 통한 직업훈련 실시
현장훈련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학생	5월~12월	업체별 2명 이하 학생을 지정하여 1~2주간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사업체견학	센터서비스 이용 장애청소년	7월~11월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고용현장의 견학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제공
지원고용 훈련연계	현장훈련 대상자 중 고용을 위해 추가훈련이 필요 한 장애청소년	5월~12월	현장훈련을 수료한 학생 중 사업체-학생이 고용/취업의사가 있으나 추가훈련이 필요한 경우 지원고용훈련연계로 연계하여 취업지원
취업알선 및 취업	고등학교3학년, 전공과 학생 중 취업가능 장애청소년	연중	현장훈련, 기타연계 등으로 사업체-학생이 고용/취업알선(지원고용/일반고용) 후 근로 계약체결 유도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 064-735-2652~5)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홈페이지 (www.jejudy.or.kr)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대상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 내용

- 교육현장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을 예방하여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 운영내용
  -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한 인권침해 노출 방지
  -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 문의

- 제주시 인권지원단 (☎ 064-754-1277)
- 서귀포시 인권지원단 (☎ 064-730-8139)

○ 자료 출처

- 제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jse/index.jje)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se/index.jje)

### 3 통학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학생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또는 통학거리는 1.5km이내이나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 보호자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 ※ 장애인 거주시설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 및 선탑자는 지원가능(1회만 통학비 지급)
      - ※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도보, 통학 및 대중교통(통학버스 포함)이동이 가능하지만, 보호자의 의지로 자가통학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등)를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교통복지카드·장애인교통복지카드·청소년용제주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

○ 내용 • 통학비 지원 금액 기준 (대중교통비에 준함)

구분	1회단가	지원 횟수
초등학생	350원	1일 최대 2회
중·고등학생(청소년)	850원	1일 최대 2회
보호자(성인)	1,150원	1일 최대 4회

○ 방법 • 통학비 신청서 작성 후 학교에 제출

○ 문의 • 해당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64-710-0329

○ 자료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je.go.kr)

### 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 희망자

○ 내용

- 재활 치료지원
  - 지원 영역 : 언어, 놀이, 청능, 미술, 음악, 행동(심리행동),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 ※ 위 치료 영역 중 1가지 영역만 지원 가능
  - 치료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최대 월 16만원
- 병·의원 치료 지원
  - 지원 영역 : 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 ※ 위 치료 영역 중 1가지 영역만 지원 가능. 단, 1가지 영역을 여러병원에서 치료 가능. 제주희망나눔카드(재활치료 지원)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순회·내방치료와 동시 지원 불가
  - 치료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최대 월16만원 한도 내 실비
    - ※ 치료 내역과 금액이 표기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 치료비 세부 산정 내역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지원
- 치료사 치료지원(순회·내방치료)
  - 대상 :

연령	조건 및 담당 교육청
만0세이상~만3세미만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교육청 장애 영아 교육지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영아 중 신청자
유치원(만3세~만5세)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유치원(공·사립)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 중 신청자 ※ 어린이집 소속 학생은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학교(공·사립) 소속 학생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신청자
특수학교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특수학교 재학 중인 유·초·중학교 과정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고등학생, 전공과 제외)

- ※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는 치료 수업의 내용에 따라 진행 가능한 별도의 치료공간을 확보하여 순회치료를 신청함. 치료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미신청 될 수 있음
-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교 및 치료사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치료시간 및 수업시수를 담당 치료지원전담팀 회의를 통해 결정함
- 치료사 치료 지원 영역 : 언어재활, 운동재활
  - ※ 위의 영역 중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치료사의 영역만 가능
  - ※ 위 영역 중 1가지 영역만 지원 가능
  - ※ 재활치료지원(제주희망나눔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지원과 동시에 지원불가

- 방법 • 보호자가 신청서 제출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치료지원 여부 및 영역선정
- 문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등교육과 (☎ 064-710-0325)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je.go.kr)

## 5 특수교육지원 인력지원

- 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내용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육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신 할 수 없음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중등교육과 (☎ 064-710-0326)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je.go.kr)

## 6 병원 학교

- 기능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도모 및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치료효과 증진

- 운영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파견학급 형태  
• 학적, 출결, 성적 등 학생의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 교사복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리  
• 병원학교 시설은 제주대학교병원 2층 소아병동 내 15평 규모로 마련

교육과정	구분	내용
	수강대상자	장기입원이나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
	교육과정 편성	- 편제와 시간 배당 :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 - 병원학교의 연간 수업일수 : 협력학교에 준함 - 학사일정 : 협력학교의 학사 일정에 준하여 운영 - 일과운영·학습활동 시간 : 1시간 20분 이상
	출석인정	초등 : 1일 1시간이상 병원학교 수업 참여 시
	출결통보	매월 초(5일 이내) 출석확인 공문 발송
	성적 및 평가	평가는 당일 재적학교 출석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할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점 반영 가능

- 도서관 운영사업 • 목적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책 대여 및 독서공간 제공을 통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학교 내 도서관 운영  
• 내용  
- 대상 : 원내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  
- 운영시간 : 16:00~17:50(월~금)

- 문의 •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의료사회사업팀 (☎ 064-717-2458)

- 자료 출처 • 제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jejunuh.co.kr)

## 7 장애 영아 교육지원

- 대상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만 0~3세 미만의 영아
- 내용 • 장애 영아 개인별 치료 지원  
•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가족지원 및 상담지원 등
- 방법 •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문의 • 제주시 교육지원청 (☎ 064-754-1266~7)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064-730-8143)
- 자료 출처 • 제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jse/index.jje)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se/index.jje)

## 8 방학 중 계절 학교 운영

- 대상 • 관내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100명 이내  
※ 운영상황에 따라 계절학교 운영장소 및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간 •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2주 운영
- 내용 • 특수교육 대상자의 요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방학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능력개발  
•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용 절감 및 방학 중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
- 방법 • 해당 교육지원청 신청
- 문의 • 제주시 교육지원청 (☎ 064-754-1268)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064-730-8144)
- 자료 출처 • 제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jse/index.jje)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se/index.j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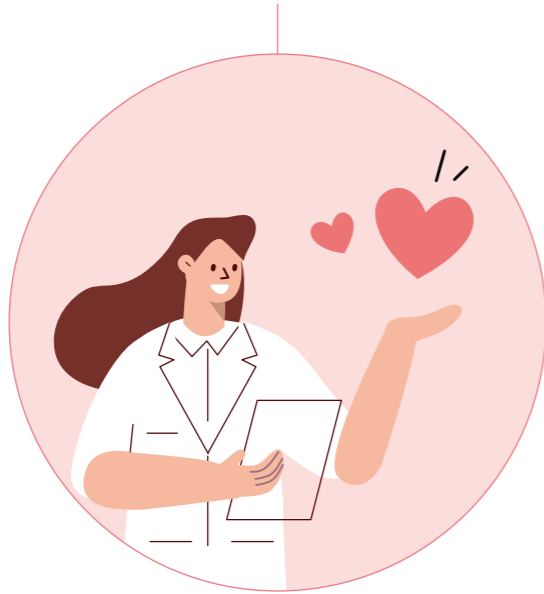
## 9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관내 초·중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 기간 • 제주시 : 1,2학기 중 지정된 토요일, 학기당5회, 총 10회 (제주시)  
• 서귀포시 : 6월,11월(매주 토요일)
- 내용 • 제주시 : 공예, 요리 등 체험활동  
• 서귀포시 : 체육, 미술, 목공, 감각 운동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 방법 • 해당 교육지원청 신청
- 문의 • 제주시 교육지원청 (☎ 064-754-1270, 1263)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064-730-8142)
- 자료 출처 • 제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jse/index.jje)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se/index.jje)

## 10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대상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여 무상대여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자립생활 형성, 학생 및 교사의 특수교육의 질 향상  
• 대여기간  
- 검사도구 : 최대 1개월(연장 불가)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 최대 6개월(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 방법 • 개인(영아 및 장애등록 아동)대여 시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후 센터 방문을 통한 대여  
• 기관(학교)대여 시  
소속 학교에서 학습보조기 및 보조 공학기기 대여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제출
- 문의 • 제주시 교육지원청 (☎ 064-754-1257)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064-730-8145)
- 자료 출처 • 제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jse/index.jje)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je.go.kr/jse/index.jje)

# 의료·재활 서비스



## 1 KT 꿈품교실

○ 대상 •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 내용 • KT 꿈품교실 교육과정

1학기	▶	3월 / 4월 / 5월
2학기	▶	6월 / 7월 / 8월
3학기	▶	9월 / 10월 / 11월
4학기	▶	12월 / 1월 / 2월

• KT 꿈품교실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룹	요일/시간
미술교실	영유아	월요일~금요일
음악교실	초등(저학년)	09:00~18:00
언어치료교실	초등(고학년)	[언어 40분 수업+ 미술/음악 50분 수업]
	청소년	

※ 프로그램 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언어치료교실(6개월 간 1학기로 운영)

- 청각보조기기(인공와우,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 24개월 미만 : 최소 착용 기간 6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최소 착용 기간 3개월 이상

- 방법
  - 제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후 진행(수시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신청서
  - 신청서 작성 후 제주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회사업팀 직접방문 및 Fax [064-717-1135]로 신청
- 문의 • 제주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회사업팀 KT꿈품교실 담당 (☎ 064-717-1559)
- 자료 출처 • 제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www.jejunuh.co.kr)

## 2 소아재활 낮 병동

○ 대상 • 뇌성마비, 발달지연, 외상성 뇌손상, 척수염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 내용 •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형태인 부분입원의 한 유형으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머물면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재활치료 시스템

• 치료시간 : 6개월(상반기 : 3월~8월, 하반기 : 9월~2월)  
 ※ 6개월 치료 진행 후 다음 기수 치료 여부 결정(낮병동 횟수 증가 및 차감, 외래 전환, 종결)

• 낮병동 입원시간

구분	주 1회 ~ 4회	시작시간	종료시간
연령	만 12세까지	08:30	14:35
		09:05	15:10
		09:40	15:45
이용시간	1일 6시간 이상	10:15	16:20
		10:50	16:55
		점심시간 12:30~13:30	

• 치료프로그램

- 물리치료 : 운동치료, 기구치료(갈릴레오, 스텐더, 승마, 모토매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 작업치료 :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및 전산화인지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및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 언어치료 : 놀이중심 언어치료, 취학을 앞둔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의 언어치료

- 방법 • 외래접수 → 진료 → 평가 → 평가결과 확인 및 치료대기 → 낮병동치료 혹은 외래치료
- 문의 • 제주권역재활병원 (☎ 064-730-9000)
- 낮병동 (☎ 064-730-9049)
- 자료 출처 • 제주권역재활병원 홈페이지 (www.jrh.or.kr)



# 여성장애인



##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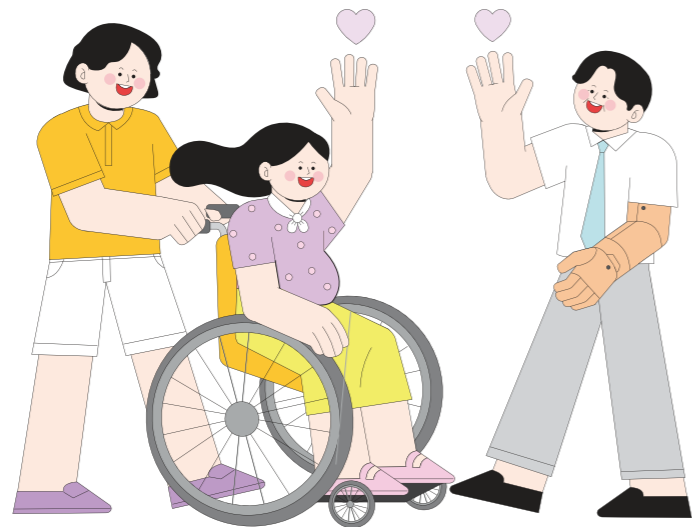
- 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출산당시 장애인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
    - ※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방법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모바일로도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http://www.gov.kr))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 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 대상
  - 여성장애인
  - ※ 제외대상 : 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내용
  - 주2~5회 가사도우미 파견 지원  
[1회 평균 2~5시간]
  -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 정서 및 물품 등 지원
- 방법
  - 각 시의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문의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 064-702-0295)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 064-735-2643)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jejurehab.or.kr/](http://www.jejurehab.or.kr/))
  -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seogwicrc.or.kr/](http://www.seogwicrc.or.kr/))



## 3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대상
  - 여성장애인
- 내용
  - 상담사업
 

내용	폭력상담(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성매매 등), 성교육·성상담, 민원상담, 인권상담, 가정문제상담, 심리상담 및 검사 등
유형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치유사업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지원(치료비지원, 의료동행, 의료자문위원상담)</li> <li>② 법률지원(고소장 작성, 경찰·검찰 동행, 법률 자문위원 상담)</li> <li>③ 심리지원(지능검사, 심리검사 진행과 상담 자문 위원 심리·정서)</li> <li>④ 연계지원(쉼터입소, 직장 알선 등)</li> <li>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심신치료, 회복 지원</li> <li>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1:1 지정상담가 방문-사후관리</li> </ol>
치유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심신치료, 회복 프로그램</li> <li>②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가족 맞춤형 예방·자립 프로그램 운영</li> <li>③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가정 부부자조모임 운영</li> </ol>
- 방법
  - 전화·방문상담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온라인상담 : <http://jwdc.or.kr>
  - 이메일상담 : [jwdc0326@hanmail.net](mailto:jwdc0326@hanmail.net)
- 문의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064-756-4983)
- 자료 출처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홈페이지 (<http://jwdc.or.kr>)

## ※ 도내 임신·출산 관련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산부인과 병·의원

구분	산부인과명	주소	전화번호	분만가능 여부
서귀포시	고은희산부인과의원	서귀포시 중정로 78	064-762-2266	
	루카산부인과의원	서귀포시 월드컵로 8 3층 304호 (강정동)	010-9905-9375	
	엔젤산부인과의원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9번길 12, 2층	064-756-7575	
	엘라여성의원	서귀포시 중앙로 89 3층	064-767-8275	
	제일산부인과의원	서귀포시 동문로 46	064-733-23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423	분만가능
	현대산부인과의원	서귀포시 동문로 61	064-763-8889	
	현해선산부인과의원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5 제주 유폴리아 지식산업센터 D동 301호 (서호동)	064-739-0003	
	다나산부인과의원	제주시 고마로 47	064-702-1186	분만가능
	드림포레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서사로 136	064-759-7838	분만가능
	로즈앤의원	제주시 1100로 3333 4층	064-803-3723	
	마리산부인과의원	제주시 고마로 146	064-755-2544	
	맘편한산부인과의원	제주시 1100로 3283 지하3층, 3층, 4층	064-711-3080	분만가능
	메디필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중앙로 308	064-725-3575	
	미래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연북로 28, 1층	064-712-2882	
	서해산부인과의원	제주시 동광로 131	064-758-8866	분만가능
	에덴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수덕로 6, 4층	064-748-9400	
	엘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중앙로 352 오현타워 4층	064-726-6555	
	에나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서광로 83	064-741-7000	분만가능
	오나정산부인과의원	제주시 건주로 31 한라실험 삼화지점 2층	064-755-1115	
이민정산부인과의원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타워 303호	064-712-7500		
이승희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서광로 208-1	064-756-1199		
제이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연북로 38 6층	064-747-9100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3길 15	064-717-1820	분만가능	

구분	산부인과명	주소	전화번호	분만가능 여부
제주시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000	분만가능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000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000	
	한나산부인과	제주시 도령로 7	064-711-7717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	064-750-9000	

### ○ 산후조리원, 조산원

구분	산후조리원명	주소	전화번호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064-730-3654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모는 이용료의 50% 감면]	서귀포시 중앙로 125	064-762-3005
	로열프린세스 산후조리원(연동점)	제주시 과원로 70, 3층	064-748-8855
제주시	프라임 산후조리원	제주시 오남로 82	064-702-1155
	메종포레 산후조리원	제주시 서광로 83,에나빌딩 3층,4층	064-712-8279
	맘편한 산후조리원	제주시1100로 3283,2층 영화빌딩	064-711-3080
	김순선 조산원	제주시 오남로 224	064-757-5141

※ 2025년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wavy lines.

# 04

## 보건·의료편



# 의료비 지원



##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 3차 외래 및 1, 2, 3차 입원 전액 지원
- 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대표번호 064-717-2720      팩스 064-717-2721  
 홈페이지 www.jrhmc.co.kr      인스타그램 jejuhmfordisable

## 2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제주)

-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0이전 1급 장애인'
    -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추가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내용
  - 외래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 입원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 방법
  -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 지참 후 의료기관에 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064-710-4510)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3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제주)

- 대상
  - 투석일·이식수술 사전검사일·투석 혈관 수술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내용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연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 (연1회에 한함)
- 방법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의료기관에 복지카드 제시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복지카드 및 신분증,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 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 세대원이 많은 경우

※ 제외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 받은 자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관련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불가

○ 내용 • **수술비**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당해 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방법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 및 시설장이 검사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 신청, 수술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술비 지원 신청

○ 문의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 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5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모든 등록장애인

○ 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 방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처리 됨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 064-740-1142)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 064-735-6323)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6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 방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처리 됨  
(누락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 064-740-1102)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 064-735-6381)

○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7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방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처리 됨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 064-740-1153)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 064-735-6336)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8 산정된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자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
-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1~2등급)	→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 방법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인 경우 자동처리
  - 경감대상이어도 경감되지 않았을 경우 경감신청서(별도서식) 작성 후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적용시기 :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9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기타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장애유형, 정도 관계없음]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정신 장애	▶	심한 장애
뇌병변 장애, 뇌전증 장애	▶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의 장애유형
- 장애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

- 방법 • 진료 예약 순서
 

초진 예약(전화 또는 방문)	▶	예약 날짜에 내원하여 접수
	▶	초진 및 진료상담 ▶ 재진예약
-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
- 문의 • 제주대학교병원 예약센터 (☎ 064-717-1114)  
•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064-717-1841, 제주대학교병원 별관]
- 자료 출처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내  
[상단에 진료안내, 예약 → 전문센터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0 장애인 산소치료 영양비 검사 면제

-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 내용 •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대여료 지원, 검사비용 면제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진단서 제출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재활서비스 지원



### 1 재활의료기관 (제주권역재활병원)

- 대상 •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내용 • 회복기 재활환자의 대상 질환 및 입원시기·기간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대상환자 구성 기준	
		입원시기	입원 종료일
중추 신경계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대퇴골, 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비사용 증후군	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우리나라 질병분류로 구분되지 않은 환자군으로, 급성질환이나 수술 후 근육 위축 또는 소실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재활이 필요한 환자

• **제공서비스**

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 적정 입원기간 보장, 재활전문 치료팀에 의한 통합치료계획 수립, 주기적 기능평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지역사회 연계·주택방문 등 퇴원계획 수립

• **재활치료 종류**

소아재활치료(소아운동재활, 소아작업재활), 운동재활치료, 작업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소아언어치료, 성인언어치료), 열전기재활치료, 인지재활치료, 수중재활치료, 연하장애치료, 스포츠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내용** 일상생활동작 훈련, 관절가동범위운동 등의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상태 및 재활 요구도 파악, 기능평가 및 재활운동실시, 자가관리운동법 교육

**시기** 연중 1~8회

**이용 방법** 재가장애인 (보건소 등록장애인)  
관할 지역 보건소 접수 및 등록 →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담당자가 가정 방문 후 상담 및 욕구파악 → 대상자 선정 시 가정 방문

퇴원 환자 - 퇴원 전 주치의 처방 후 방문재활실시  
- 상태에 따라 연계기관 의뢰

※ 구비서류 필요 없으며,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방법** • **병원 진료예약 후 진료**

○ **문의** • **제주권역재활병원 (☎ 064-730-9000)**

○ **자료 출처** • **제주권역재활병원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 제주권역재활병원 (www.jrh.or.kr)**

## 2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대상** • **법적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 **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퇴원관리 상담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관리 등

• **지역자원 연계 사업**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및 사례관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 **지원 사업**  
장애인 운전 지원,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보조기기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 **홍보**  
사업홍보, 장애체험 등  
※ 각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8725)  
-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 064-728-8729)  
-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09)  
-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15)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6)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43)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688)

○ **자료 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www.nr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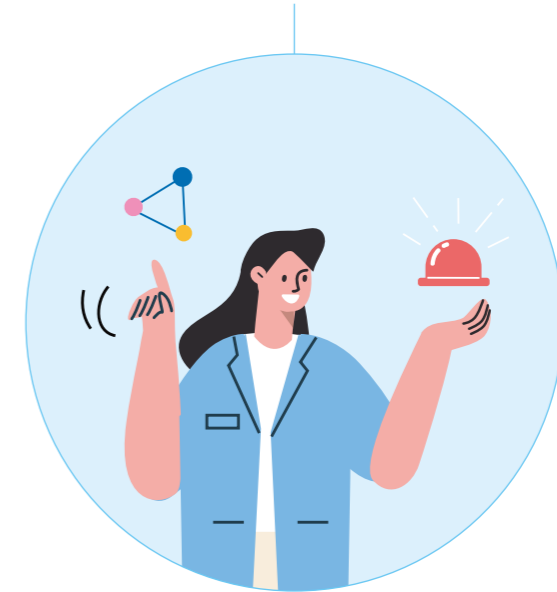
###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 대상 • 장애아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 내용 • 어린이재활·낮병동·외래  
• 생애주기별 재활 서비스  
• 보조기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 사례관리  
•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 가족지원 서비스  
• 재활체육
- 방법 • 제주권역재활병원 외래접수 (1층원무팀) → 진료 (1층진료실)
- 문의 • 제주권역재활병원 (☎ 064-730-9000)
- 자료 출처 • 제주권역재활병원 홈페이지 (<https://jrh.or.kr>)  
•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춘강의원)

- 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내용 • 재활의학과 진료  
• 특수클리닉 (보조기 의지클리닉, 힌다리, 족부클리닉)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지원(도내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협의회연계사업, 통합지원 프로그램 연계사업 순회방문진료)
- 방법 • 제주춘강의원 내원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문의 • 제주춘강의원 (☎ 064-754-7400)
- 자료 출처 • 제주춘강의원 홈페이지 (<https://jejurh.com>)  
•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 보조기기 지원



###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호흡·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44종 품목을 지원 \*\*교부품목 별첨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064-753-9997)
- 자료 출처 •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37만원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DAIS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	100만원	4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2년
독립형 번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대(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13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년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년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93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0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10만원	5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240만원	3년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텍스트 음성 변환(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뇌병변	290만원	5년
전동칫솔	지체·뇌병변	35만원	2년

## 2-1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 내용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 방법(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보조기기유형	전문과목
의자·보조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지체·뇌병변 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 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 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힌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는 제외함

※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처방전 발급 시에만 해당

### ② 사전급여신청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크라이닝형)만 해당)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제출
- 공단은 보조기기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가능

### ③ 보조기기 구입

-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인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 ④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

-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힌지팡이, 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 수동휠체어, 전·후방 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검수확인서 면제

### ⑤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 보조기기 구입 후 공단에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 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기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⑦ 사후점검

- 공단은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 문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 (☎ 1577-1000)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064-753-9997)

###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2-2 장애인 보조기기 - 의료급여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내용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방법
  - ① 보조기기 처방전
    -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 발급  
[신청자가 거주지의 동일 시도 외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 임을 입증해야함]
  - ② 보조기기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후 지원여부를 결정
    - 당해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조기기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기기를 신청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 부적격판정 시 :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 후, 필요 시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④ 보조기기 구입(제작·판매업자)
    -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조기기,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조기기 판매
  - ⑤ 장애인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
    -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
  - 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법정 대리인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
  - ⑦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⑧ 사후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한 지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문의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064-753-9997)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이용 힌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 돌보기 및 망원경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분류	보조기기 유형	전문과목	
의자·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개인용 음성증폭기	이비인후과	
기타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수동휠체어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자료 출처	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3-1

## 보조기기 대여·수리 (서귀포시장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 대상
  - 서귀포시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내용
  - 보조기기 대여  
3개월 대여 가능, 대기자가 없을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기기 수리  
1년에 3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선착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종료)
- 방법
  -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후 방문
- 문의
  - 서귀포시장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 064-762-1703
- 자료 출처
  - 서귀포시장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 3-2

## 보조기기 대여 (제주도립노인요양원)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장애유형 상관없이 신청 가능
  - 1개월 대여가능, 총3번 갱신가능 (갱신 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리자가 신청가능)
  - 무료
-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 문의
  - 제주도립노인요양원 ☎ 064-726-1162
- 자료 출처
  - 제주도립노인요양원  
※ 26년 휠체어 대여 사업 검토중으로 유선 확인 필요

### 3-3

## 보조기기 수리(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휠체어 고장 점검 필요시

- 대상
  - 도내 등록장애인
- 내용
  - 보조기기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방문수리 및 사용방법, 안전교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비수급자(80%)
공통(무상)	- 부품교환이 필요없는 수리(기초 경정비 및 공기압 주입) - 응급 수리지원(방문수리 및 비상튜브 지원)	
지원비용	- 수동 휠체어 : 30만원 - 전동 휠체어 : 40만원	- 수동 휠체어 : 24만원 - 전동 휠체어 : 32만원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수급자 여부 확인서
- 수리대상품목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타이어, 튜브 및 구동과 관련된 부품), 수동휠체어(타이어, 튜브, 소모 부품), 기타(목발 및 워커 등)
- 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 문의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4-751-9100
- 자료 출처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jcil.or.kr>)

# 4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보조기기 점검,수리,맞춤상담)

○ 대상 • 제주도내 등록장애인 및 노인성질환으로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한 노인

○ 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전시체험  
• 보조기기 관리(보조기기 점검/수리서비스), 소개 및 사용교육(홍보활동)  
• 보조기기교부사업 등 공적급여 연계  
• 보조기기 클린사업(보조기기 살균·소독기)

○ 방법

1. 초기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이용하여 기초상담
2. 욕구분석(상담)	보조기기에 관한 욕구 확인 및 접수진행
3. 평가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잔존 기능적 상태 및 보조기기 평가
4. 정보제공	평가 후 적용단계에서 보조기기 및 공적급여 연계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단순정보제공
5. 교육·훈련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보조기기 조작 및 사용방법 교육 및 훈련
6. 기기 적용	영역별 보조기기 적용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정
7. 기기대여	기기적용의 적합성이 판단된 보조기기 대여
8. 사후평가	서비스 제공 후 3개월 후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욕구변화, 보조기기 사용 현황 파악 등을 실시

• 신청시 필요서류

- 상담·평가 기록지, 보조기기 시험적용·대여 계약서(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보조기기를 대리로 수령할 경우 서류
  - 이용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 유선신청 가능 : 생년월일, 이름, 장애유형, 중증도
- ※ 휠체어인 경우 어떤 종류를 희망하는지, 차량에 적재가능여부 확인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 064-726-9669)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홈페이지  
(<http://jatc.co.kr/index.php>)

## 제주 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연번	업소명	주소	취급품목	업소명
1	K3	제주시 원노형남 2길 19-0 (노형동) 청솔빌리지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064-742-0447
2	거산의료기, 보청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9 (서귀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32-1337
3	광우메딕스 (㈜제주지사)	제주시 월랑로 1, 7층 (노형동)	보청기	064-724-8222
4	국제보청기프라자	제주시 서광로 190 (삼도일동, 2층)	보청기	064-743-7175
5	굿모닝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220, 2층 (삼도일동, 서광빌딩)	보청기	064-744-5005
6	귀편한보청기 청각재활센터	제주시 노형8길 19, 5층 (노형동)	보청기	064-712-7755
7	그랜드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삼도일동)	보청기	064-725-9275
8	금강디지털보청기	제주시 삼무로 16, 4층 (연동, 삼주빌딩)	보청기	064-712-6233
9	나누미	제주시 신대로 7길 37, 지하층 (연동)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44-8840
10	나눔헬스케어	제주시 아란4길 92, 1층 (아라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064-753-0801
11	나이스보청기	제주시 노형 11길 5-5, 102호 (노형동)	보청기	064-742-1379
12	내안경보청기	제주시 월랑로 40, 1층 (노형동, 라인빌딩)	보청기	064-712-0507
13	뉴튼보청기 제주지사	제주시 서광로 295 (이도일동)	보청기	064-721-3862
14	다비치이어링 제주한라대점	제주시 한라대학로 15, 1층 (노형동)	보청기	064-742-1258
15	다비치이어링 서귀포시청점	서귀포시 중앙로 112 (동홍동)	보청기	064-732-1357
16	다비치이어링 신서귀포이마트옆점	서귀포시 월드컵로 8 (강정동)	보청기	064-739-8055
17	더본메디칼	제주시 고마로 56, 2층 202호(일도이동)	수동휠체어	064-751-7854

연 번	업소명	주소	취급품목	업소명
18	드림케어스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지하층]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10-2734-6687
19	맑은소리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189 [삼도일동]	보청기	064-758-3743
20	메가헬스포츠	제주시 진남로 6길 38, 1층 [화북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64-727-0420
21	모든의료기	제주시 일주동로 96, 1층 [화북일동]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46-8291
22	반딧불용구	제주시 신성로 106-2, 지하동 [이도이동]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26-2403
23	베스트보조기	제주시 연무정길 46, 1층 [건입동]	인지·보조기 [교정형신발 등]	064-752-1052
24	벨튼보청기	서귀포시 중정로 77-1 [서귀동]	보청기	064-763-3585
25	벨튼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중앙로 71, 2층 [이도일동]	보청기	064-725-2544
26	삼성의료기	제주시 남녕로 28-1 [연동]	보청기	064-748-0087
27	상모오토바이	서귀포시 상모로 262 [대정읍]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010-8979-4433
28	서귀의료기상사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4 [동홍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육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	064-733-3835
29	서울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267, 2층 [삼도일동]	보청기	064-755-3452
30	서울의료기상사	제주시 연신로 51 [이도이동]	수동휠체어	064-751-6611
31	설문대의료기	제주시 서광로 3길 47, 1층[용담일동]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64-721-7282
32	성만메디컬	제주시 구남로 49 [이도이동]	수동휠체어	064-726-1337
33	소리샘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185 [삼도일동, 2층]	보청기	064-753-5347
34	소리케어보청기	제주시 연북로 76 [연동, 한성빌딩 4층]	보청기	064-744-4458
35	수의료기	제주시 아란13길 20 [아라일동]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02-9366

연 번	업소명	주소	취급품목	업소명
36	스타키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중앙로 279, 2층 [이도이동]	보청기	064-725-5100
37	안경매니저, 보청기매니저 [아라점]	제주시 중앙로 552, 1층 [아라일동]	보청기	064-755-5501
38	에이치컴퍼니 주식회사	동광로 124, 1층 [일도이동, 기봉빌딩]	보청기	010-2413-1728
39	연세보청기	서귀포시 중앙로 54번길 14 [서귀동]	보청기	064-732-5777
40	와이맥스보청기 제주지사	제주시 동광로 4, 3층 [이도이동]	보청기	064-755-1005
41	외도굿모닝보청기	제주시 우평로 338, 3층 [외도일동]	보청기	064-900-0074
42	웰스보청기	제주시 1100로 3321, 202 [노형동]	보청기	064-745-9222
43	일도튼튼 의료기보청기	제주시 고마로 71, 102 [일도이동]	보청기, 수동휠체어	064-725-7599
44	제이컴퍼니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로 376 [노형동]	보청기	064-742-7171
45	제이헬스케어	제주시 월랑로 91 [이호이동, 중앙병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064-747-8858
46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보청기	064-717-1075
47	제주메디	제주시 아연로 531, 1층 [아라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064-753-3350
48	제주보청기	제주시 삼무로 16, 4층 [연동]	보청기	064-748-6233
49	제주복지용구 / UD부동산중개	제주시 원당로 46 [삼양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10-9429-0469
50	제주의료기상사	제주시 중앙로 14길 4-1 [이도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육창예방방석, 육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22-3324
51	제주의료복지 용구기관	제주시 우평로 223, 1층 [도평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064-727-0103
52	제주장애인 편의시설	제주시 하귀3길 32, 1층 [애월읍]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064-759-2821

연 번	업소명	주소	취급품목	업소명
53	제주케어메디칼	제주시 삼성로 9길 28 (일도이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10-5242-3368
54	조은소리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300-1 (이도이동)	보청기	064-702-5995
55	조은소리보청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8-0 (동홍동)	보청기	064-733-5996
56	조은손	제주시 고산동산 1길 12 (이도이동)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64-752-5682
57	㈜금호익스프레스	제주시 황사평 6길 90- 21, 1층 (화북이동)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	064-725-2424
58	㈜뉴튼보청기	제주시 서광로 295, 1층 (이도일동)	보청기	064-721-3862
59	㈜시온요양기관	제주시 중앙로 603, 2층 (아라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53-7533
60	㈜제주연합상사	제주시 오복7길 11, 101호 (이도이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064-724-7100
61	참조은의료기, 보청기	제주시 월랑로 96 (도두일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900-3378
62	케어라이프	제주시 천수로 33, 101호 (이도이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64-722-3300
63	토탈메디	제주시 오동9길 43-6 (오동동)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064-726-9922
64	포낙보청기 제주법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395 (이도이동)	보청기	064-744-7007
65	한라의료기	제주시 동문로 69 (건입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064-722-2999
66	한마음의료기상사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이동, 한마음병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64-757-0510
67	행복나눔 (복지용구)	제주시 가령로 44 (이도이동)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064-726-1209
68	회르만보청기	제주시 이도1동 1405-2 창림빌딩 2층	보청기	064-721-3443

## 5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대여, 체험, 교육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조기기가 필요한 모든 분

○ 내용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 보조기기 맞춤형 지원사업  
• 사후관리 지원사업  
• 교육 및 홍보사업  
• 기타 자체발굴사업  
•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방법

1. 의뢰 및 접수	센터내방, 콜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2. 상담	상담실시 및 계획수립
3. 평가	영역별 평가
4. 맞춤형 지원	정보제공, 기기 적용 및 대여(대여계약서 작성), 교육 및 훈련, 개조 및 제작
5. 자원 연계	정부지원, 민가지원, 센터지원사업
6. 사후관리	점검 및 소독세척, 수리 연계, 다시쓰기(재사용)
7. 종결	
8. 모니터링	

• 견학프로그램

- 보조기기 전시장 운영을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보  
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센터 및 보조기기 관련 정보 제공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콜센터 ☎ 064-753-9997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홈페이지  
(<https://www.jejuat.or.kr>)

# 장애인 건강관리



##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 장애인
  - ※ 예비 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내용
  - 다양한 지역자원간의 연계·조정으로 보건의료복지 복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

<b>장애인건강 보건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li> <li>-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li> <li>-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운영</li> <li>-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li> <li>-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연계</li> </ul>
<b>여성장애인모성 보건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여성 장애인 등록 및 관리</li> <li>- 임신·출산 전문의료 서비스제공</li> <li>- 여성장애인 건강 관리교실</li> </ul>
<b>의료서비스 제공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의료서비스 직·간접 제공 및 연계</li> </ul>
<b>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교육</li> <li>- 장애인과 가족 대상 교육</li> <li>- 장애인 건강권 교육운영</li> </ul>

- 방법
  - 센터 내방하거나, 연계기관이나 당사자 직접 의뢰 시 가정방문 가능
- 문의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문의 (☎ 064-717-2720)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http://www.jrhmc.co.kr>)
- 자료 출처
  -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 2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대상
  - 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 ※ 우선순위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법적 등록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 (예비장애인)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장애인
    - 돌봄자 유무, 거주지와 의료기관 접근성 고려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정기적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정기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건강 및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기능평가(MBI) 49점 이하 또는 삶의 질(EQ-5D) 0.660점 미만	기능평가(MBI) 50~74점 또는 삶의 질(EQ-5D) 0.660점 이상	기능평가(MBI) 75점 이상

※ 장애인 대상 측정도구 평가를 입력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군 분류를 하되, 담당인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시 군 분류 조정 가능

- 내용

서비스 구분	대상자군		세부 프로그램(예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건강관리 서비스	필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뇨·배변관리</li> <li>- 욕창·피부 관리</li> <li>- 영양관리</li> <li>- 구강관리</li> <li>- 통증관리</li> <li>- 연하관리</li> <li>- 호흡관리</li> <li>- 만성질환관리</li> <li>- 기타</li> </ul>
재활훈련 서비스	선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운동교육</li> <li>- 일상생활동작훈련</li> <li>- 관절구축예방교육</li> <li>- 2차 장애예방교육</li> <li>- 생활안전교육</li> <li>- 기타</li> </ul>

서비스 구분	대상자 군		세부 프로그램(예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사회참여 서비스	선택	선택	- 외출 / 나들이 / 체험 - 동료상담 / 자조모임 - 스포츠 / 레크레이션 - 가족소모임 - 기타
자원연계 서비스	필수	선택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센터 연계 - 의료기관 연계 - 장애인복지관 연계 - 장애인단체 연계 - 행정기관 연계 - 교육기관 연계 - 자활센터 연계 - 자원봉사자 [활동보조] 연계 - 장애인 운전 지원 -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 - 보조기기센터 연계 - 건강검진 지원 - 기타
자기역량 서비스	선택	필수	-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수	필수	- 프로그램 소개 - 나를 이해하기 - 일상생활 동작관리 -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 건강관리 운동 -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 마무리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 목적 : 퇴원 이후에 처음 겪는 장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 주요내용 : 건강관리, 재활훈련,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 대상자 : 재활의료기관에서 의뢰되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예비장애인)
- 운영기간 : 총 8회(최소 4회)
- 운영시간 : 1시간 이내/회

- 방법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선, 방문하여 접수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접수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8725)
  -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 064-728-8729)
  -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09)
  -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15)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6)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43)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688)

- 자료 출처
-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
- 만성질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내용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관리 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 건강관리 + 주 장애 관리
대상 기관	의원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 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 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고혈압·당뇨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바우처(연1회)	-	고혈압·당뇨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바우처(연1회)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연 1회)		
	중간 점검(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환자 관리(월 1회)		
방문진료, 방문간호(중증 : 연 24회, 경증 : 연 4회)			

- **방법**
  -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혹은 유선 문의·신청
- **문의**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문의 (☎ 064-717-272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 ※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관 검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특성별기관찾기 → 장애인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 시/도, 시/군/구 선택 후 검색
- **자료 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지원 자료실 ([www.nrc.go.kr](http://www.nrc.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주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서비스유형	지역	의료기관명	연락처	주소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집으로가는준의원	064-805-0119	제주시 아란13길 10, 3층 (아라일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모아의원	064-742-7586	제주시 과원북4길 5, 1층 (노형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메디오름 가정의학과의원	064-757-5080	제주시 선덕로18, 진일빌딩 1층 (연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봉개영웅의원	064-757-2217	제주시 번영로 500 2층 (봉개동)
주장애관리 (지체·뇌병변)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064-717-1114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탑동365일의원	064-756-3650	제주시 탑동로 24, 2층 (삼도이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하나가정의학과 의원	064-743-8111	제주시 월랑로 59, 2층 (노형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연세위드신경과 의원	064-712-3379	제주시 노형8길 2 2층 (노형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노형365준의원	064-746-9977	제주시 수덕로41 2층 (노형동)
일반건강관리	제주시	청수의원	064-756-2248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276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지적·정신·자폐성)	서귀포시	박정신건강의학과 의원	064-762-0946	서귀포시 중정로 53 (서귀동)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세화방치과의원	064-901-3003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40, 3층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하나치과의원	064-725-3001	제주시 신성로 76, 3층 (도남동)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루아치과의원	064-753-2833	제주시 중앙로 337 4층 (이도이동)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그랜드치과병원	064-728-0000	제주시 서광로 301, 6~8층 (이도일동)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정성치과의원	064-782-7528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48, 1, 2층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오라치과의원	064-758-2875	제주시 오남로 1, 2층 (오라일동)
구강건강관리	제주시	문치과의원	064-724-2828	제주시 관덕로13길 6 1~2층 (일도일동)

## 4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내용**

구분	구강 건강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 및 일부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장애)
관리 범위	지속적·포괄적 구강 건강관리
대상 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 의사
서비스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연1회) 구강 건강관리(불소 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 주치의 :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 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방법**
  -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 및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혹은 유선 신청
- **문의**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문의 (☎ 064-717-272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
    - ※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관 검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별기관찾기 → 장애인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시/도, 시/군/구, 치과 선택 후 검색
- **자료 출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지원 자료실 ([www.nrc.go.kr](http://www.nrc.go.kr))

## 5 장애인건강검진

- 대상
  -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이용 가능
    - ※ 다만 장애인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지참해야 함

- 내용
  -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유형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 장애유형별 지원서비스

장애유형	지원서비스
지체, 뇌병변 장애	-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
청각장애	-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사전예약 필요) 지원 - 필담(문자)이 가능한 진료시간을 확보
시각장애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인력이 이동과 의사소통 도움
발달장애	- 검사받기가 무섭다면 가족(보호자)과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아프거나 힘든 검사를無理하게 강요하지 않음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기다림과 쉬운 설명

- 방법
  - 건강검진 순서
 

예약 ▶ \*사전체크리스트작성 ▶ 접수 ▶ 문진표작성 ▶ 검사 ▶ 귀가 ▶ 결과통보

    - \* 사전 체크리스트는 검진 예약 후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가능
    - ※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소 7일 전 사전 예약 및 확인 후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검진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의료기관명	주소	기관 연락처	비고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47 신관 지하 1층	064-730-3460~3	
중앙병원	제주 제주시 월랑로 91, 5층	064-786-7282	
제주의료원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1층	064-720-2152~3	장애인건강검진기관지정 후 운영개시 준비중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 15, 2층	064-717-1580	장애인건강검진기관지정 후 운영개시 준비중

- 문의
  -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64-717-2720)
-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시/도 선택 후 검색 → 장애친화 검진기관 검색

## 6 제주금연지원센터

- 대상
  - 중증·고도 흡연자/주거, 교육, 사업장 등에서 생활하는 흡연자군
- 내용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개인)
    -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 전화)등 6개월 간 금연프로그램 제공
      - 니코틴 보조제(12주간)제공
      - 금연행동강화 물품 제공
      - 건강측정서비스(호기일산화탄소, 혈압, 혈당, 폐활량 등)
      - 6개월 금연성공시 수료증 및 기념품(상품권) 제공
  -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자
    - 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참가비 10만원 납부(무단취소 방지를 위함이며 캠프수료 후 일주일 이내 환급)
    -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 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 생활터 금연환경만들기
    - 금연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 금연 홍보 및 캠페인
    - 생활터 현장 환경 진단 및 관리자 대상 컨설팅
    -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 방법
  - 온·오프라인으로 등록 상담 신청

- 문의
  - 제주금연지원센터 (☎ 064-758-9030)
  - 생활터금연환경조성 (☎ 010-8814-9030)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입원환자 (☎ 010-3068-9030)

- 자료 출처
  - 제주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yeonkang.org/index.php>)

#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wavy lines.

# 05

## 복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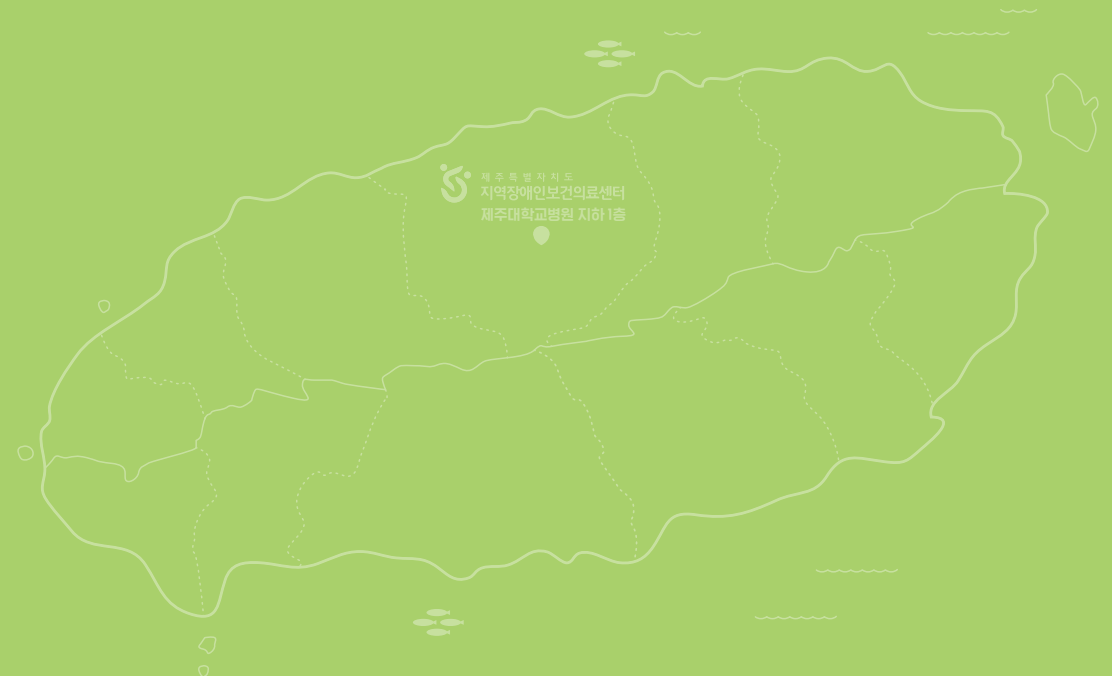


# 경제적 지원



## 1 장애인연금

-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① 기초급여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②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 내용 • 2026년 월 지급액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기초급여	349,700원	없음
	* 부가급여	90,000원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기초급여	349,700원	없음
	부가급여	없음	없음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기초급여	349,700원	없음
	부가급여	없음	8만원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기초급여	349,700원	없음
	부가급여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기초급여	349,700원	없음
	부가급여	없음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기초급여	349,700원	없음
	부가급여	3만원	5만원

※ 기초급여

-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 필요)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 감액 미적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 적용 안함
  - 65세 이상이 되어도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 급여만 지급할 수 없음.

- 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포 (www.bokjiro.go.kr)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복지포 (www.bokjiro.go.kr)

## 2 장애수당

-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전3~6급)

-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상이한 금액 지급  
• 2025년 월 지급액 기준

구분	기초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 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포 (www.bokjiro.go.kr)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복지포 (www.bokjiro.go.kr)

## 3 장애 아동 수당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급의 선택신청이 가능

-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 2026년 월 지급액 기준

• 경증장애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신청없이 직권책정 가능하며, 주거·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별도 신청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중증 9만원 경증 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증 17만원 경증 11만원

- 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등)으로 신청
  -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필요/18세 되기 1개월부터 신청가능)
    -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4 중증 장애인 추가 수당(제주)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 이전에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내용
  - 1인 월 3만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 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매월 20일)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28-3445)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3)
- 자료 출처
  -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복지로 (www.bokjiro.go.kr)

## 일자리 지원



## 1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 (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직원재활시설지원 업무	주 5일 (40시간)	2,096,270원
	시간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주 20시간	1,048,140원
복지 일자리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 반영 한 맞춤형 직무 수행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61,68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주 5일 (25시간)	1,313,93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주 5일 25시간	1,313,930원

- 방법
  -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시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 1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2유형 : 중위소득 60%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 단, 만 69세 초과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
    - ※ 참여제한
      -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주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가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 외국인
      - 이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 내용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서비스 제공

### <단계별 프로그램>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1개월 이내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2회 이상 상담 실시) -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12개월 이내	- 지피지기(취업코칭)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등) - 내일배움카드 발급 연계 - 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시 5만원~10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월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 [월 50만원·최대 300만원·조기 취업시(3회차~5회차)·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3단계 : 고용 안정 및 유지	
6개월 이내	- [취업자] :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 - 취업성공수당 · 3개월근속 : 30만원 · 6개월근속 : 40만원 · 12개월근속 : 80만원 - 최대 150만원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시 지급

-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문의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43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3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장애인 근로자
    -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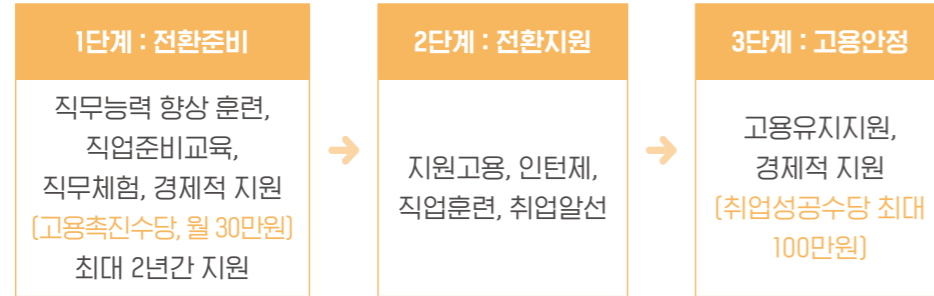
- 내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1년간 서비스 이용 가능 (본인 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문의
    -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이용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1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4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내용 • 직업재활과 훈련기회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



○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문의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1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5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대상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  
•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만 해당
  - ※ 제외 : 국가로부터 유사목적(사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장애인근로자 통근 용 승합 자동차 이용자)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내용 • 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U&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우리카드 앱에서 신청. 인근 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신청(공단에서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동거인의 경우 차량 주유비까지 지원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방법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원)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52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대상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 훈련수당지급 대상 :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의 맞춤형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 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형훈련센터(8개소), 발달장애인 훈련개소(19개소)

### 지원 내용(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 다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함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월 최대 5만원 지급
식비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인 과정 참여자 월 최대 6만 6천원 (3,300원/일) 지급 ※ 단, 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 지참)으로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

-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문의하거나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4-907-53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 064-717-670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 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대상
  -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제주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jejubokji.net>)

## 8 장애인 인턴제

- 대상
  - **[중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장애유형**  
 ※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총 8개 유형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으로 매 3년 마다 변경, '24년부터 '26년까지 적용
  - **[장년]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제도 적용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검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
  - **[발달]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 사업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장애인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
- 내용
  - **[인턴지원금]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10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80만원)**
-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혹은 도내 해당 사업장에 문의**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대상
  -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내용
  -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 방법
  -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에 문의**

시설유형	시설명	연락처	주소	주요생산품
보호	길직업재활센터	064-796-5777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세탁, 종이컵, 물티슈, 제빵, 카페
보호	아가굽드래	064-783-9920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상패, 판촉물인쇄, 기념품, 현수막, 안내판
보호	어울림터	064-732-0295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6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양초
근로	에코소랑	064-732-2288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화장지,발효과실원, 커피, 차 등
근로	엘린	064-752-2299	제주시 은남1길 4	서비스-숙박업, 건물위생관리업, 에어컨세척
보호	일배움터	064-723-9104	제주시 기와5길 83	카페, 원예
판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064-702-1459	제주시 선사로6길 91 (삼양일동)	-
근로	춘강장애인근로센터	064-702-7851	제주시 516로 3114, 3120-1	토너카트리지, 가방, 침구류, 세탁서비스, 복사용지
보호	평화의마을	064-794-6277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수제햄, 소시지, 훈제스테이크
보호	한라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064-799-9225	제주시 매월읍 하소로 747-23	생과자, 과자, 빵, 떡류
근로	희망나래일터	064-751-5152	제주시 구산동길 15-1 (아라일동)	인쇄물, 소핑백, 현수막, 판촉물인쇄, DM발송, 문서화일 등
보호	희망나래꿈터	064-755-1246	제주시 구산동길 15 (아라일동)	이동스팀세차, 동영상제작서비스, 오란다, 카페테리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문의
  -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에 문의 (상단 표 참조)**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 자료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제주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jejubokji.net)**

## 10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 대상 • 등록된 중증장애인
- 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증지원 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 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방법 • 방문신청 :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온라인신청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  
- 정부 24([www.gov.kr](http://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 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 구비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대리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1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사업개시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 내용 • 일반과정  
- 온라인교육 :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창업넷, [start.debc.or.kr](http://start.debc.or.kr))을 통한 기초/역량 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발급 (당해연도 창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  
- [창업 컨설팅] 창업단계 및 희망분야별 맞춤형 1:1 컨설팅 진행  
- [창업 특화교육] 장애 유형/특성별 특화교육(기초교육, 업종기술교육, 실습 및 현장 체험, 장애인기업 CEO 스토리텔링,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특화교육 우수 수료생 대상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점포 패스트트랙 연계
- 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이메일 신청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1588-6072, 02-2181-652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 064-749-8234
- 자료 출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 12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초기창업자
  - ※ 지원불가대상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내용
  - 점포보증금 : 최대 1억 3천만원 지원, 최대 5년
  - 컨설팅지원 : 점포개발 및 사후관리 컨설팅 등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방법
  - 우편, 내방, 이메일 접수(1차, 2차, 3차 총 3회에 걸쳐 모집)
  -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1588-6072, 02-2181-6536)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 064-749-8234)
- 자료 출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 복지포 (<https://www.bokjiro.go.kr>)

## 13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 ※ 지원불가대상 : 비영리사업장,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 업종
- 내용
  -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 지원
  - 매장 모델링, 집기 구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지원 제외 항목은 공고문 참고)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20%)
- 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 내방, 이메일 접수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1588-6072, 02-2181-6534)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 064-749-8234)
- 자료 출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 14 장애인 기업 영업환경 개선 지원

- 대상
  - 업종 추가 예정인 영업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 ※ 지원불가대상 : 비영리사업장,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등 용자제외 대상 업종
- 내용
  - 경영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개선 비용 지원
  -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아이템변경에 따른 설비, 사무집기 구입비 등(지원 제외 항목은 공고문 참고)
  -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 방법
  - 모집공고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http://www.debc.or.kr))를 통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 (연1회)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1588-607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 064-749-8234)
- 자료 출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 15 장애인 기업 지원

- 대상
  - 장애인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
  - 창업보육실 지원의 경우 장애인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 기업만 해당

목적 및 내용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 금액의 80%를 지원(국내 : 200만원 한도, 국외 및 온라인 : 500만원 한도)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 무역실무교육 / 무역전략컨설팅 / 해외 IR 지원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목업)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기구설계, 워킹목업 등),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금 상이)
장애인기업 우수기술 사업회를 위한 국내·외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	국내·외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비용 지원 (최대 15백만원 한도)
1인 사업자 보조공학 기기 지원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를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내 지원
공공구매 시장진출을 위한 판로지원	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장애인 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입점을 통해 마케팅 활동 지원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입찰, MAS, 이음장터) 지원
장애인기업 정부포상 시상	모범적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경제인 정부포상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
장애인기업 우수사례 홍보 및 인식개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뉴스레터 <텝씨네 소식> 격주 제작 및 발송
창업보육실 운영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등 제공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정보제공

- 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 공공구매 시장진출 판로지원 : 판로지원시스템(biz.debc.or.kr), 온라인 전시몰(드림365) 홈페이지 참조(dream365.or.kr)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1588-6072), 기업성장부, 대외협력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 064-749-8234)
- 자료 출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 1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대상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 제주지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목록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주시 선사로6길 91(삼양일동)	064-702-1459
아가급드래	제주시 조천읍 함외로 267-5	064-782-9920
춘강 장애인근로센터	제주시 516로 3114	064-702-7851
희망나래	제주시 구산동길 15-1(아라일동)	064-751-5152
어울림터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6	064-732-0295
엘린	제주시 은남1길 4	064-752-2299
에코소랑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064-732-2288
평화의 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064-794-6277
일배움터	제주시 기와5길 83	064-723-9104
길직업재활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064-796-5777
한라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064-799-9225
희망나래꿈터	제주시 구산동길15 (아라일동)	064-755-1246

- 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연회 보건복지부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064-702-1459)
- 자료 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제주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jejubokji.net>)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 17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인 자
- 내용 •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절차: 서류 및 면접 전형
- 방법 • 인터넷 접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http://www.gosi.kr))
- 문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 044-201-8245)
- 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s://www.mpm.go.kr/mpm/>)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 18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 대상 • 중증의 청각 장애인
- 내용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대체
-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청각장애 중증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044-201-8374~5)
- 자료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www.gosi.kr](http://www.gosi.kr))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 19 근로능력평가 면제

- 대상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
- 방법 • 필수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2개월 이내 발급)  
-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추가서류  
- 질환별로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etc/worker/worker03\\_01.jsp](https://www.nps.or.kr/jsppage/etc/worker/worker03_01.jsp))

# 교육 지원



## 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 대상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생

○ 내용

대학명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제주대학교	인력지원	- 이동보조 및 생활보조 - 강의대필 - 시각장애인 자료 지원 - 속기지원 ※ 지원인력은 재학생, 일반 교육지원 및 전문 교육 지원 인력으로 구성	
	기자재지원	노트북 컴퓨터, 전동휠체어, 기립형휠체어, 수동휠체어, 점자 정보단말기, 옥창방석, 데이지음성 플레이어, 휴대용 독서확대기, 수동휠체어 이동보조기(터치형, 바이크형), 손가락타이핑막대	
	시각장애인 학습교재지원	필요한 도서를 점자 또는 텍스트 파일로 대체하여 제공	
	장학금 지원	장애정도과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생활관우선배정	장애인 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관 배정	
	교통관리비 면제	장애학생 이용 차량에 대한 교통관리비(주차비) 전액 면제	
	도서관 서비스	학내 도서 배달 서비스, 도서관 열람실 이용 지원(좌석 지정 및 사물함 제공), 정보검색실 장애학생 전용 지정 PC 운영	

대학명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제주국제대학교	장학 지원	학부생에 한해 중증 장애인의 경우 8학기 동안 지급
	우선수강신청제도	수강신청 시 비장애학생보다 1일 전 먼저 수강신청 가능
	상담지원	일반상담, 학생상담, 취업상담 지원(방문, 전화, 인터넷) 사전 신청한 학생에 한해 도서 배달 서비스 지원(도서 대출 및 반납, 도서 검색, 정보 이용), 장애학생 전담사서제를 운영하여 정보 검색과 자료 대출 등을 직접 지원
	도서관 지원	수동휠체어, 급속충전기(전동휠체어 등) 지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학습기자재지원	수동휠체어, 급속충전기(전동휠체어 등) 지원
	교수·학습지원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 학습 도우미 배정 노트북,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독서확대경, 독서확대기, 녹음기, 특수키보드, 힌지팡이, 소리증폭수신기, 클러치, 휠체어 책상, 침대 등
	기자재 대여	대학생할 적응 상담, 진로상담과 취업준비, 취학편의 및 편의 시설 지원
	대학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의(1~3급) : 800,000원, 경증인(4~6급) : 500,000원 지원
	장학금 지원	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채용간담회, 이동직업상담소 프로그램
	학기중 프로그램	장애학생 특화 프로그램(동계 : 승마체험 / 하계 : 요트체험)
	방학중 프로그램	장애학생 특화 프로그램(동계 : 승마체험 / 하계 : 요트체험)
제주관광대학교	학습 및 생활도우미 지원	학교이동, 대필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지원
	교수·학습지원	우선수강신청제도, 교수학습조정 권고 안내문 발송, 강의실 내 장애학생 전용좌석제도 실시, 시험평가지원(시험시간연장, 도우미대필지원, 확대시험지제공, 과제제출연장)
	학습및보조기구대여	학습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장학지원	중증 장애인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1/2지원, 경증 장애인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1/3지원
	이동편의지원	이동도우미지원, 강의실 변경지원
	생활복지지원	생활관 우선입소 지원, 생활관 1층 우선배정, 대학생활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진로 및 취업지원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취업카드작성 및 인적성검사, 사회 맞춤형 장애인 복지과정 운영(LINK+사업), 장애인 맞춤형 전용 교육시설구비(바리스타교실, 유통실습실, 정보처리실, 시설관리실습실)

○ 방법

• 각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 문의

- 제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064-754-2545
- 제주국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064-754-0221
- 제주한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064-741-7575
- 제주관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064-740-8700

○ 자료 출처

- 제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s://support.jejunu.ac.kr>)
- 제주국제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s://www.jeju.ac.kr/support/index.htm>)
- 제주한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s://www.chu.ac.kr>)
- 제주관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s://www.jtu.ac.kr>)

## 2 장애인 정보화 교육(방문, 집합)

- 대상
  - 집합교육 : 등록장애인
  - 방문교육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실생활 디지털 서비스 활용, IT자격증 획득, 지능정보기기활용 등 수준별 기초(초급) 생활(중급) 심화(고급) 교육 실시
  - 신청자 수준과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진행
- 방법
  - **집합교육**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및 장애 정보화교육으로 개설된 과정을 검색하여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홈-> 배움터교육-> 장애집합교육-> 교육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방문교육**  
반드시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해 사전 신청 (중증장애인에 한해 교육을 받기 원하는 자택 및 희망장소)
  - 전화신청 (☎ 1588-2670)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053-230-1370)
  - 제주 콜센터 (☎ 064-757-1096)
- 자료 출처
  - 디지털배움터 (<https://www.디지털배움터.kr>)

## 3 장애인 운전교육(국립재활원)

- 대상
  - 면허종류: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조건 : E, F, G, H, I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1)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거나 특수제작 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 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음
    - 2) E : 청각장애표시 및 블록거울
    - F :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G : 특수제작 및 승인차
    - H : 우측방향지시기
    - I : 왼쪽엑셀러레이터
- 내용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 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내방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1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s://www.nrc.go.kr>)

## 4 장애인 운전 면허 취득 교육

- 대상
  - 등록장애인
  - 취득조건
    - 시력
      - 1종 면허: 좌·우 시력 각각 0.5 이상, 양안 0.8 이상
      - 2종 면허: 양안 시력 0.5 이상, 단안시력 0.6 이상
      - 단 안: 좋은 눈 0.8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을 것
    - 청력
      -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장애
      - 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자
    - 발달, 정신장애
      -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합격한 자
    - 그 외 장애
      - 별도의 취득 조건은 없으며, 상담 후 진행
- 내용
  - 자동차운전면허취득교육 (학과, 기능, 도로주행)  
※ 시험응시 및 면허증 발급 수수료 본인부담
- 방법
  -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
- 문의
  -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64-710-9233~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1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road.or.kr>)

## 5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제주)

- 대상
  -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단,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 내용
  -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만원 이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방법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내용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시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방법
  -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어린이집 소속 장애유아는 교육청 지원 재활치료비 신청 불가(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64-710-0325)
  - 제주시 특수교육지원센터 (☎ 064-754-1277)
  - 서귀포시 특수교육지원센터 (☎ 064-730-813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je.go.kr>)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주거지원



##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 **성년(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가구당 1회 한정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 2025년 대상자 선정 기준표

인정액 기준 (단위:원)	1인가구	1,196,007~2,392,013원
	2인가구	1,966,329~3,932,658원
	3인가구	2,512,677~5,025,353원
	4인가구	3,048,887~6,097,773원
	5인가구	3,554,096~7,108,192원
	6인가구	4,032,403~8,064,805원
	7인가구	4,494,214~8,988,428원
	8인 이상	1인증가시마다 최소 461,811원, 최대값은 923,623원씩 증가

※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출자금)

- 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 최고 3%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최고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 5년 분할 상환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 2 주택 특별(우선) 공급 및 입주 선정 특례

-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장애인이 공급신청자)
    -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
- 내용
  - 1. 국민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건설량의 10%내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함.
  - 2. 영구임대주택
    - 장애인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
    - 장애인공급신청자가 1순위 입주자격을 받기위한 충족요건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공공주택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
  - 3. 국민주택
    - 공급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하며, 이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
- 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모집공고 확인 및 인터넷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 공공임대주택 ▶ 공지/자료 확인 ▶ 현장 접수 및 우편(등기우편) 접수
- 문의
  - LH 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064-780-3300⇒2⇒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4인 기준 2,926,931원)이하인 가구
  - 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전월세비용 및 주택개량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주기)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 ※ 고령자(만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으로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문의
  - 내마이홈 (☎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
  - LH 주거급여 사무실 제주 (☎ 064-720-1095)
  -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사업 LH 담당자 제주 (☎ 064-720-1040)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4 에너지바우처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내용
  -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동안 자유롭게 사용  
다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팔호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가능)
  -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5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대상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 내용
  -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실내 환경 개선 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지원
  -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에 문의 및 신청
  -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사 및 심의 후 선정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 064-754-380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1827)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 제주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jejubokji.net)

## 6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제주)

- 대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하고,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자
- 내용
  - 1인 10,000천원(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 시설 입소 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 지원
- 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 후 신청자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시 노인장애인과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064-710-2892)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239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7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대상
  - 지원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2024년 4인 가구 8,248,467원
  - 지원주택 : 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 개인의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노후도 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범위에서 집행 가능  
\* 예) 외상장애인(소형 기종기, 매립형보조기 등), 뇌병변 장애 및 상지장애인(도어락), 청각장애인(문개폐 알림장치), 시각장애인(스마트 장치) 등  
※ 장애인 자가 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신청 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매년 대략 3월경 공고) 공고문 참고(도 공고란 “장애인 주택개조” 검색 참고)
  - 신청 후 도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2698)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https://www.jeju.go.kr]
  -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고

## 자립 지원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1 장애인 지원·자립 주택

- 대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대상자 신청 조건 : 거주 시설·쉼터 이용 장애인, 재가 장애인 중 보호자의 돌봄 역할이 어렵거나 1인 독립 생활 장애인  
※ 신청 후 시범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내용
  -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 자립역량 강화 워크샵
  - 자조모임
  - 자치회의
  - 지원주택 집담회
  - 동료상담
  - 자립생활 데이, 체험홀 데이
  - 자립아카데미
  - 퇴거자 지원

- 방법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서식 작성 후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 제출(방문,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 신분확인 서류,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자립 지원 신청서 및 자립기초 조사표 각 1부
- 문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22-1370)
- 자료 출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jejusicc.or.kr)

## 2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

- 대상
  - 1순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 제외자
  - 2순위 : 1순위 이외에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 ※ 동순위별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인가구 > 소득정도 > 장애정도 > 고령자
- 내용
  - 찾아가는 재활운동 지도서비스
  - 찾아가는 발달재활서비스(언어, 미술, 음악, 감각 등)
  - 찾아가는 심리재활서비스
- 방법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있는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등 신청
  - ※ 신청자 자격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을 수 있음.
- 문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22-1370)
- 자료 출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jejusicc.or.kr)

## 3 1인 가구 자립지원 연계 서비스

- 대상
  - 1순위 :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장애인
  - 2순위 : 수급자 자격 1인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동순위별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인가구 > 소득정도 > 장애정도 > 고령자
- 내용
  - (통합) 돌봄밥상 : 명절을 맞이하여 센터 지원인력이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 및 안부 확인
  - 1인 가구 생활로드맵 : 1인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강좌형과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제공
  - 주거 공간 스타일링 : 대상자 자택에 방문하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요인을 파악하여 쾌적한 환경 재설정
- 방법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접수
- 문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22-1370)
- 자료 출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jejusicc.or.kr)

## 4 단기자립체험주택

- 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만60세 이하의 전(全)장애인
- 내용
  - 자립체험 전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별단기자립생활계획 수립
  - 이용자가 자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자립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립체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기간 : 최소 5박 6일~최대 20일(연간 최대 이용일수 30일)
- 방법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접수 (신청서 제출 ▶ 초기면접 ▶ 선정 회의 후 결과 안내 ▶ 개별 단기 자립생활 계획 수립 ▶ 개별 단기 자립생활 계획에 따른 지원 ▶ 단기자립체험주택 퇴거)
- 문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22-1370)
- 자료 출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jejusicc.or.kr)

## 일상생활지원



### 1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 제외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내용
  -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①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신체 기능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기타
    - ② 방문목욕
    - ③ 방문간호
    -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규칙 제12조 제2항)
  - 월 한도액(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① 활동지원급여 : 구간(1~15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15구간 1,000,000원~1구간 7,980,000원)
    -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 ② 특별지원급여(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

구분	지급기간	월한도액
출산(유·사산)	6개월	1,332,000원
자립준비	6개월	335,000원
보호자일시부재	사유에 따라 차등	335,000원

- 지원 방법
  -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 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20,000원

#### ○ 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규신청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절차



# 1-1 장애인 활동지원\_보전급여 (※23년 신설)

- 대상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내용
  - 활동지원 급여 내용과 동일
  - 보전급여 수급 중 만 65세에 도래한 경우 별도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없이 잔여 유효기간까지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도래 시 갱신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등급에 변동 발생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보전급여 재산정
  -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거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보전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참고] 도내 활동지원사 파견 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장애인연맹	제주시 고마로 56, 2층 202호	064-723-9963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시 천수동로 30, 101호	064-751-9100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 서광로 27길 16 제주현대빌딩 4층	064-759-498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시 청사로 75, 4층	064-725-1370
참된장기요양기관	제주시 고마로 44, 2층	064-723-1326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2	064-710-9900
힘찬 노인복지센터	제주시 진동로 21, 102호	064-721-0691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서귀포시 서흥로 159-4	064-732-2358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3층	064-762-1700
효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 효동로 199	064-767-3373
사회적협동조합 반디	제주 제주시 월구길 17-15	064-702-7277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 제주시 서광로 27길 16, 제주 현대빌딩 501호	064-758-0877

하나노인복지센터	제주 제주시 가령로 37 1층 102호	0507-1407-3936
(사)봄날 그리고 햇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30 1층	064-805-9460
(사)가족누리통합돌봄센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227-13	064-792-1484
가족재활복지타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안성로 52-7	064-792-7662

## 2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

-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 추가지원요건
    -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내용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 급여 비용 : 시간당 16,620원 (심야 및 공휴일 : 24,930원)
  - ※ 추가지원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시간이 소멸된 이후부터 사용 가능, 추가지원 시간,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
  - 지원기준 : 급여 구간별로 월 30시간~90시간
-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3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 대상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종중 수급자 이면서 다음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①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 ②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 ③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 내용
  - 24시간 활동지원사 배치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
  - ※ 국고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되며 잔여시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
  - ※ 도 추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안됨
-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4 장애인가정 도우미 지원 (제주)

- 대상
  - 도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가족으로서, 서비스 대상은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미취학자녀
  - ※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
- 내용
  - 보호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 시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양육지원 등
  - 월 32시간 이내(1일 4시간 기준, 월 8회 이내)
  - 본인부담금 : 시간당 1,800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은 면제)
- 방법
  - 제공 기관으로 가정 도우미 지원 신청(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필요)
  - 제공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064-702-137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 064-733-0568)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064-702-137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 064-733-0568)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5-1 이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19.6.30. 이전 등록장애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 2019.7.1. 이후 등록장애인 : 중증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365일 연중 휴무, 24시간 운행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운행(섬 지역 제외)  
• 이용요금  

기본요금 (10km이내)	거리요금 (10~30km)	거리요금 (30~45km)	요금상한제 (45km 초과)
1,200원	100원	50원	4,000원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 방법 •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전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이용 신청서 작성 후 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  
• 당일 이용시간대 전화접수 (☎ 1899-6884) 및 인터넷을 통한 차량 신청 (24시간 실시간 접수)  
• 승차 전 복지카드 제시  
※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자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4명까지 가능합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064-740-9201, 팩스 070-4275-1253)  
• 이메일 : jejuhappycall@naver.com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happycall.com>)

## 5-2 이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 대상 •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신장, 지적 장애)  
※ 지적장애인은 보호자 동승 필수  
• 경증 장애인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 필요
- 내용 • 병원 치료 목적을 우선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제주 전 지역 운행  
• 1인 주3회까지 이용 가능(왕복 기준, 편도만 이용할 경우에도 1회 차감)  
• 이용요금 : 무료  
• 운행시간 : 평일 09:00~18:00
- 방법 • 차량 이용 희망일 전일 10:30~15:30 사이에 전화 예약  
제주시 (☎ 064-805-4086) / 서귀포시 (☎ 064-763-3890)  
• 차량이용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064-805-4086)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5-3 이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 내용 • 병원진료, 장보기, 금융업무, 외출 시 차량운행 및 보행보조 지원  
• 운행시간 : 평일 09:00~18:00  
• 이용요금 : 관내 이동 1,000원, 제주시 → 서귀포시 2,000원
- 방법 • 제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 (☎ 064-725-0020)  
병원 이용 : 3일 전에 신청 / 일반 이용 : 1일 전에 신청  
• 예약번호 (☎ 064-725-0020)
- 문의 • 제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64-758-1114)
- 자료 출처 • 제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5-4 이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 내용 • 제주 전 지역 운행  
• 운행시간 : 평일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이용요금 : 무료
- 방법 • 차량 이용 신청서 제출  
• 예약번호 ☎ 064-753-3225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 064-753-3225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jejuwel.or.kr/index.php>)

## 5-5 이동지원(제주도농아복지관)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
- 내용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지원  
• 운행시간 : 화~금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
- 방법 • 기존 이용자 : 사전 조율을 통한 예약  
• 신규 이용자 : 이용신청서 작성 후 조율
- 문의 •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지원팀 ☎ 064-711-9094
- 자료 출처 •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 (<http://deafwel.or.kr>)

## 6 자립지원 시범사업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대상 • 등록장애인  
※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에 따른 시범사업
- 내용 • 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  
• 개별 자립지원 서비스 수립  
•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 홀리모델링
- 방법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 문의
- 문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22-1370
- 자료 출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jicc.or.kr/>)

## 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대상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등록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사정 선정)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 소득조건 없이 등록장애인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 내용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방법 • 주소지를 해당시설로 이전 ▶ 읍·면·동에서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 시·군·구 담당자 신청 확인 및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 의뢰 ▶ 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 결과 안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입소 장애인

○ 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료 648,000 원 중 매월 286,000원 지원

○ 방법 • 거주시설 또는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하고, 시·도에서 서식에 맞춰 신청하면 시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문의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 064-728-2553)  
•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9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내용 •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10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 포함)

○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ac.or.kr](http://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 064-753-9955)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귀포지사 (☎ 064-803-0681)

○ 자료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 대상
  - 등록기준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내용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60만원)
- 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온라인 접수 불가, 연중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대상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 ※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 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참여자 1인당 당일 여행 시 75,000원, 1박 2일 여행시 150,000원, 2박 3일 여행 시 240,000원 지원
- 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사업 수행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지역센터)에 신청
- 문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지역센터 (☎ 064-803-3714)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13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내용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 : 월 132시간 / 확장형 : 월 176시간 등 2가지 유형
  - 기준단가 : 16,620원, 본인부담금 없음
- 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14 시각·청각장애이용 TV 무료 보급

- 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면서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 비저소득층(일반)이면서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 ※ 보급유형 : 무상보급(저소득층), 5만원 유상보급(비저소득층)
- 내용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이용 TV를 당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보급
- 방법
  - 시청각장애이용 TV전용 누리집([tv.kcmf.or.kr](http://tv.kcmf.or.kr))에서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 자료 출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s://tv.kcmf.or.kr>)

## 15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대상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이용 방송프로그램)
- 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 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 방법
  - 각 방송사 홈페이지 접속(검색 시 방송사명 뒤에 ‘장애인 서비스’ 덧붙여서 검색)하여 영상(VOD) 시청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 02-6900-8322)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1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출력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방법
  - 도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구비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등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 064-710-2345)
  - 정보통신 보조기기 (☎ 1588-2670)
- 자료 출처
  -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s://www.at4u.or.kr/index.asp>)

## 17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

- 대상
  -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 보험료 및 가입범위 : 행정시 별 예산범위 내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 보장범위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최저 30만~최고 1천만원 보상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천만원 보상
    -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진단금 : 10만원
  -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 도내 행정시 간 전출이 되더라도 보험가입 유지
  - ※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지진,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추출 및 접수, 보험사 선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 상해 발생 시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험 담당자 연락처 안내 요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18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

- 대상
  - 중증장애인
    -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 내용
  - 1인당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
    - ※ 본인통장 입금원칙 예외 인정 : 장애아동,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19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 (제주)

- 대상
  - 청각·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내용
  - 1인당 월 33,300원 지원(인터넷 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 방법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 문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확인증),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20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제주)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내용
    -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 디지털방송 최저요금 상품(1년 약정기준, VAT포함) 22,000원의 35%
    - 이용요금 및 STB 사용료 추가액 및 시설설치비는 방송사 부담
      - ※ 협약 방송사 : [주]KCTV제주방송
      - ※ 상품명 : HD 120
- | 상품명    | 채널수 | 요금가격(VAT포함, 1년 약정) |                 |                  | 비고                 |
|--------|-----|--------------------|-----------------|------------------|--------------------|
|        |     | 계                  | 도 지원액           | KCTV 부담액         |                    |
| HD 120 | 87개 | 22,000원<br>(100%)  | 7,700원<br>(35%) | 14,300원<br>(65%) | 장애인 가구<br>본인부담금 없음 |
- 방법
    -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21

##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내용
  -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
  -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화누리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mnuri.kr](http://www.mnuri.kr))
  -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카드 재충전됨
-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1544-3412)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s://www.mnuri.kr/main/main.do>)

# 22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대상
  - 5세~69세 장애인
- 내용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복수강좌)
  - 1인당 지원기간 : 12개월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
- 방법
  - 온라인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http://dvoucher.kspo.or.kr)) 회원가입 후 [개인회원] 메뉴에서 신청
  - 서면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역 시청 방문
- 문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고객센터 (☎ 064-797-7840)
  - 제주시 담당자 (☎ 064-728-3263)
  - 서귀포시 담당자 (☎ 064-760-3603)
- 자료 출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dvoucher.kspo.or.kr](http://dvoucher.kspo.or.kr))

## 23

### 시각장애이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대상 • 모든 시각장애인
- 내용 • 모든 시각장애인에 대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이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 24

###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
- 방법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주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접수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1
- 자료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s://mwpt.mma.go.kr>)

## 25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 신청

- 대상 • 등록장애인 중 병역미필 또는 예비군편성에 편성된 사람
- 내용 • 관련 서류 검토 후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
- 방법 • 장애등록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1
- 자료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s://mwpt.mma.go.kr>)

# 세제혜택



##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내용
  - 개별 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한도)
  - ※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방법
  - 자동차 판매인에 상담,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승용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 문의
  -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 126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내용
  -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제
- 방법
  - 주소지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청
- 문의
  - 제주시청 세무과 ☎ 064-728-2351
  - 서귀포시청 세무과 ☎ 064-760-2331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3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도 지역에 해당
-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방법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시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문의
  - 제주시 차량관리사업단 등록사무소 ☎ 064-728-8401
  - 서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 064-760-3121
  - 지역채권관련 ☎ 1588-1154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4

## 세금 공제 (소득세, 의료비, 특수교육비, 보험료)

○ 대상 • 등록장애인

구분	내용
소득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의료비공제	-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특수교육비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문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26  
• 제주세무서 ☎ 064-720-5200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사 ☎ 064-730-920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5

## 상속세 상속 공제

○ 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문의 • 제주세무서 ☎ 064-720-5200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사 ☎ 064-730-920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6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문의 • 제주세무서 ☎ 064-720-5200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사 ☎ 064-730-920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7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인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 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 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힌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목발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98)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8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시행규칙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물품 목록은 [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http://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 에서 확인)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방법 • 별도의 구비서류 없으며 통관지 세관(받는 사람 주소지에 있는 세관)에서 수입 신고 시에 관세면제 신청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9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방법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문의 • 특허청 (☎ 1544-808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10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방법 • 시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 1577-0900)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A REDUCTION IN FARES

## 요금 감면



## 1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내용 • 50% 감면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전액 면제 :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 방법 •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의 • 이용하려는 각 시설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 대상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구분	내용
심한장애인	하루 한차례에 한정하여 최초 3시간 100% 주차 요금 면제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하루 한차례에 한정하여 최초 3시간 50% 주차 요금 면제

○ 방법 •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제시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064-710-2462)

○ 자료 출처 • 제주시청 교통 정보 (www.jejusi.go.kr)

## 3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문의 • 코레일 (☎ 1588-7788)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4 유선·이동 통신 요금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유선·이동 통신 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유선·이동 통신 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

○ 내용 • 유선통신 요금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 장애인 단체 등은 팩스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 전화·인터넷 전화 중복 감면 없음)

구분	지원내용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시내·외전화, 인터넷 전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방법 •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민원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1523)

• SK : 국번없이 114 또는 080-011-6000 (무료), 1599-0011 (유료)

• KT : 국번없이 114 또는 080-000-1618 (무료) 1588-0010 (유료)

• LG U+ : 국번없이 114, 1544-0010 (유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5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시·청각 장애인의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방법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 콜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
- 문의
  - 한국전력공사 제주·서귀포 (☎ 123)
  - KBS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6 항공요금 할인

-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내용
  - 항공요금 할인은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이며 항공사마다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 방법
  - 공항 이용 혹은 항공권 예매 시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으로 증빙
- 문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에어부산 (☎ 1666-3060)
  - 진에어 (☎ 1600-6200)
  - 제주항공 (☎ 1599-1500)
  - 티웨이항공 (☎ 1688-8686)
  - 이스타항공 (☎ 1544-0080)
  - 에어서울 (☎ 1800-810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각 항공사 홈페이지

## 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내용
  -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방법
  - 여객선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문의
  - 한국해운조합 (☎ 02-6096-2044)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8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 차량 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 하이패스차로 : 지문인증방식 / 통합복지카드 방식
- 방법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9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한국전력공사 (☎ 123)
  - 인터넷 ([www.kepco.co.kr](http://www.kepco.co.kr))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10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 한국도시가스협회 (☎ 070-8282-8300)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http://www.citygas.or.kr>)

## 11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심한 장애인 : 50%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방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대상자동차 확인 후 진행
  -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문의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https://www.kotsa.or.kr>)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응급안전, 긴급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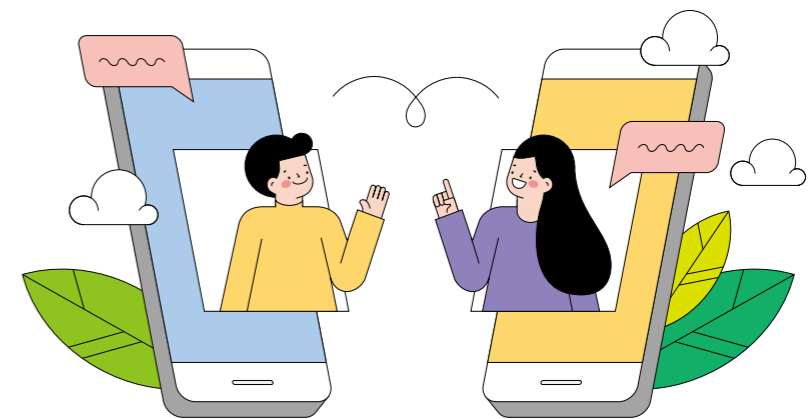


### 1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취약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내용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8033)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2

### 2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제주)

- 대상 • 주민등록기준 도내 거주중인 등록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인
- 내용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신료 지원
-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및 서식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https://broso.or.kr/jeju/mainPage.do>)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07-1406-3714)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대상
  - 등록장애인
-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대상이 되면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연번	서비스명	대상	내용
1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	- 발달기초영역, 언어발달영역, 초기 인지영역, 정서·사회성 영역에 따른 서비스 - 부모 교육 및 상담
2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18세 아동·청소년 -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 음악 교육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예 : 클래식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연주회 관람, 음악회 참여, 아동 합주,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등)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 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프로그램 - 집단활동프로그램 - 부모교육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	- 건강상태 점검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등록자 등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 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특화서비스 - 당일 또는 2박 3일 돌봄여행 서비스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상담 및 정보제공
7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 등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가족교육, 여가활동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사례 관리 -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가족교육 및 여가활동

연번	서비스명	대상	내용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15세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 -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의 경우 학습모듈 제공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 장애인 프로그램 : 혈액검사·건강상담,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놀이치유 프로그램 - 산모 프로그램 : 혈액검사·건강상담, 라마즈교육, 임신부요가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만 5세~12세 - 소득기준 없음 - 정도 이상 비만 아동	- 운동프로그램(운동처방, 운동지도) - 교육 및 상담(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 기초검사 - 학교연계형·가정방문형·혼합형·영양관리강화형 중 1개 유형 제공
13	성인 심리 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35세 이상 범위 내 - 우선순위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진단이 있는 경우, 위기가 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검사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개입과 예방,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부부·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
14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초기 자료 수집 -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기기 사용 훈련 - AAC 중재 - 대화상대방 훈련 - 부모교육 및 상담

-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3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내용
  - 지원 내용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 기간 및 시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서비스 비용 : 월 456,000원(24시간), 월 513,000원(27시간), 월 760,000원(40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4-1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 대상 •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내용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4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2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20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월 18만원	8만원

○ 방법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4-2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언어발달지원사업

○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내용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서비스 가격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4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2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0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8만원	6만원

○ 방법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5-1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내용 • 서비스 내용 : 개별/집단 상담 제공  
•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 방법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5-2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내용 • 서비스 내용 : 수급자격을 받아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중 선택  
• 기준단가는 17,2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구분	1인 집중지원 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50%	100%	80%
시간당	25,910원	17,270원	13,820원
그룹 전체	25,910원	34,540원	41,460원

- 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5-3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내용 • 서비스 내용 : 수급자격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기준단가는 17,2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7,270원	15,540원	13,820원
그룹 전체	34,540원	46,620원	55,280원

- 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복지로 ☎ 1566-0313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6

### 에너지바우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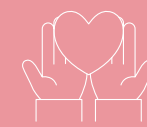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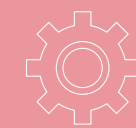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등
- 내용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실물 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
-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wavy lines.

# 06

## 부록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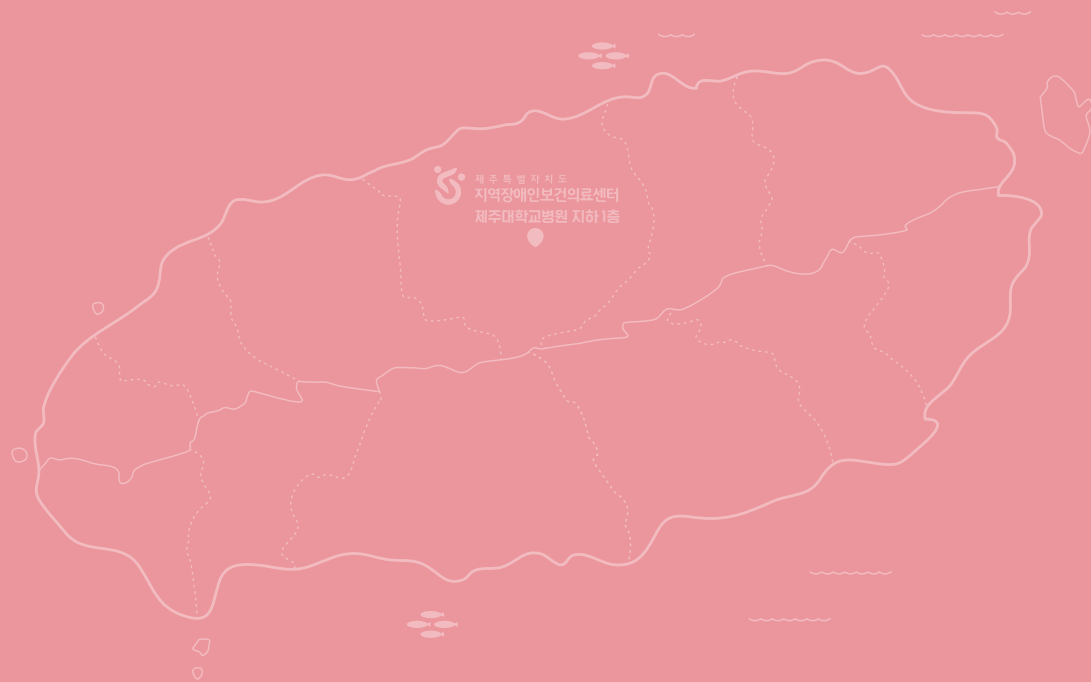
## 1 도내 장애유관기관 및 특수학급 현황

### ○ 장애전담어린이집

순번	유형	보육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	국공립	공립별빛하너어린이집	서귀포시 서호남로 19-40 (서호동)	064-732-4100
2	사회복지법인	낮은울타리어린이집	제주시 조천읍 신촌인수물남길 20 (신촌리)	064-783-7737
3	사회복지법인	유진어린이집	제주시 한림읍 어도봉남길 20 (귀덕리)	064-796-2003
4	사회복지법인	해안어린이집	제주시 해안마을6길 36 (해안동)	064-746-6205

### ○ 장애통합어린이집

순번	유형	보육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	국공립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제주시 첨단로동길 10 (월평동)	064-723-5005
2	국공립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제주시 연무정동길 22-1 (건입동)	064-722-6176
3	국공립	공립도평어린이집	제주시 도평길 22 (도평동)	064-743-3254
4	국공립	공립드림어린이집	제주시 일주서로 7486-2 (외도동)	064-711-4626
5	국공립	공립따뜻어린이집	제주시 간월동로 5길 10 (아라미동)	064-722-9912
6	국공립	공립모두별어린이집	제주시 참오길 30-5 (도평동)	064-713-0950
7	국공립	공립밝은뜨락어린이집	제주시 우정로 94 (외도일동)	064-711-5633



순번	유형	보육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8	국공립	공립별나라어린이집	제주시 남광로 18 1(일도이동)	064-757-7900
9	국공립	공립봉개내어린이집	제주시 번영로 528 (봉개동)	064-751-6286
10	국공립	공립삼도어린이집	제주시 남성로 26길 30 (삼도이동)	064-726-3037
11	국공립	공립삼화차부영어린이집	제주시 화삼북로 136 (도련이동)	064-752-2023
12	국공립	공립삼화휴먼시아 어린이집	제주시 화삼북로 2길 12 (화북동) 삼화휴먼시아 1단지 내 122동 105호	064-758-3379
13	국공립	공립새솔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하귀11길 32 (하귀1리)	064-743-2217
14	국공립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엄장로 73 (수산리)	064-713-7955
15	국공립	공립연두어린이집	제주시 구산서길 76-19 (아라동)	064-753-3113
16	국공립	공립용담동어린이집	제주시 용담로 98-10 (용담이동)	064-711-6603
17	국공립	공립일도2동어린이집	제주시 동문로 14길 16-1 (일도이동)	064-757-5416
18	국공립	공립정실어린이집	제주시 아연로 186 (오라이동)	064-742-1772
19	국공립	공립제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제주시 첨단로8길 17 (영평동)	064-724-7722
20	국공립	공립제주특별자치도공관 어린이집	제주시 삼무로 11길 28 (연동)	064-744-8500
21	국공립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 어린이집	제주시 첨단로동길 74 (월평동)	064-722-2246
22	국공립	공립첨단꿈에그린3단지 어린이집	제주시 첨단로동길 106 (월평동)	064-756-0300
23	국공립	공립탐라어린이집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064-723-9920
24	국공립	공립행복한나무어린이집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노형동)	064-747-7471
25	국공립	금능공립어린이집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41 (금능리)	064-773-0017
26	국공립	공립가마어린이집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로 26번길 31 (세화리)	064-787-4840
27	국공립	공립꿈꾸는어린이집	서귀포시 신서로 559 (강정동)	064-733-8903
28	국공립	공립내담어린이집	서귀포시 신동로 20 (법환동)	064-739-5541
29	국공립	공립다솜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로 31 (일과리)	064-792-5651
30	국공립	공립대정휴먼시아 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104동 (하모리)	064-794-9193
31	국공립	공립동심어린이집	서귀포시 말질로 204번길 34-3 (강정동)	064-739-8801
32	국공립	공립동홍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앙로 198-9 (동홍동)	064-733-8889
33	국공립	공립동화나라어린이집	서귀포시 동홍동로 32 (동홍동)	064-733-2131
34	국공립	공립라운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보성리)	064-794-2772

순번	유형	보육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35	국공립	공립샘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4 (보성리)	064-794-1347
36	국공립	공립서귀포하늘어린이집	서귀포시 서호남로 25 (서호동)	064-738-3364
37	국공립	공립성산어린이집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동서로 33 (고성리)	064-782-0830
38	국공립	공립신례어린이집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250 (신례리)	064-767-2878
39	국공립	공립유승한내들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 34 (강정동)	064-739-4422
40	국공립	공립인성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로 4번길 25 (인성리)	064-794-6129
41	국공립	공립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 12 (강정동)	064-739-0089
42	국공립	공립토평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 97번길 13 (토평동)	064-732-1398
43	국공립	공립한울어린이집	서귀포시 서흥로 82 (서흥동)	064-762-6635
44	국공립	공립효돈어린이집	서귀포시 신호중앙로 26번길 25 (신호동)	064-767-4002
45	사회복지법인	남국어린이집	제주시 중앙로 476 (아라일동)	064-702-0222
46	사회복지법인	녹원어린이집	제주시 연미3길 30 (오라이동)	064-749-1177
47	사회복지법인	동지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99 (하귀1리)	064-748-5115
48	사회복지법인	반석어린이집	제주시 매촌안길 35-1 (도련이동)	064-726-2454
49	사회복지법인	선도어린이집	제주시 명림로 163-1 (봉개동)	064-723-0117
50	사회복지법인	선유어린이집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908 (김녕리)	064-782-5945
51	사회복지법인	예심원어린이집	제주시 노형로 307-5 (노형동)	064-746-7252
52	사회복지법인	예지원어린이집	제주시 벌랑길 45 (삼양삼동)	064-756-7508
53	사회복지법인	인도어린이집	제주시 도련안길 21 (도련일동)	064-755-1309
54	사회복지법인	장미어린이집	제주시 백포중길 19 (이호일동)	064-742-5218
55	사회복지법인	참사랑어린이집	제주시 광평안길 40-9 (노형동)	064-748-7778
56	사회복지법인	해오름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구염동 1길 34 (구염리)	064-711-1238
57	사회복지법인	동산밭어린이집	서귀포시 열리로 49 (상예동)	064-738-3477
58	사회복지법인	슬기샘어린이집	서귀포시 중문상로 69번길 8 (중문동)	064-738-0585
59	사회복지법인	효명어린이집	서귀포시 성산을 동류암로 36번길 12 (고성리)	064-782-2220
60	법인, 단체	근로복지공단제주 어린이집	제주시 지석4길 12 (삼양이동)	064-723-3020
61	법인, 단체	봉개어린이집	제주시 번영로 561-8 (봉개동)	064-722-7189
62	법인, 단체	신촌어린이집	제주시 조천읍 신촌서5길 72-1 (신촌리)	064-782-7994
63	법인, 단체	제주관광대학교부속 어린이집	제주시 신대로 20길 23 (연동)	064-748-6800

순번	유형	보육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64	법인, 단체	제주영락어린이집	제주시 동광로 23길 15 (일도이동)	064-753-0846
65	법인, 단체	한림어린이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14길 13 [한림리]	064-796-8051
66	법인, 단체	동남어린이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13번길 18 [고성리]	064-782-5191
67	법인, 단체	평안어린이집	서귀포시 토평로 172 [토평동]	064-732-8881
68	민간	고슴도치어린이집	제주시 월산남2길 27 [노형동]	064-746-6786
69	민간	그린숲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절물1길 1 [외도동]	064-746-3488
70	민간	꾸러기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삼성로 90 [일도이동]	064-753-8835
71	민간	꿈꾸는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서사로 12길 8 [삼도일동]	064-757-1151
72	민간	꿈빛나무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도련1길 35 [도련일동]	064-726-2355
73	민간	나나어린이집	제주시 월두2길 59 [아라이동]	064-752-6172
74	민간	내친구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신산로 9길 3 [일도이동]	064-755-8326
75	민간	노형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아연로 193-3 [오라동]	064-746-2273
76	민간	늘사랑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관덕로 3길 9 [삼도이동]	064-721-1354
77	민간	늘찬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삼성로 13길 25-1 [일도이동]	064-725-8255
78	민간	다인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매촌2길 21-7 [도련이동]	064-723-6602
79	민간	도두크로바어린이집	제주시 도공로 549 [도두일동]	064-722-2188
80	민간	봄날의꽃잎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동문로 16길 16-1 [일도이동]	064-751-3366
81	민간	봄소리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설촌로 8길 43 [삼양이동]	064-751-2015
82	민간	부라보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삼봉로 3길 6 [도련이동]	064-758-5724
83	민간	뽕뽕어린이집	제주시 원당로 3길 5 [삼양일동]	064-759-8880
84	민간	아이미소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절물1길 28 [외도동]	064-711-9133
85	민간	아이빌꿈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오등9길 27-3 [오등동]	064-747-4147
86	민간	아이שמ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20, 1층 [외도일동]	064-743-2223
87	민간	양팡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용담로 13길 18 [용담이동]	064-743-1228
88	민간	예술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용문로 11길 33 [용담이동]	064-711-0134
89	민간	예크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황사평 6길 55 [화북이동]	064-755-0675
90	민간	요요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거로남4길 11-6 [화북이동]	064-755-7529
91	민간	이도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구남동 6길 31 [이도이동]	064-725-2555
92	민간	인메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대원북길 18-2 [아라이동]	064-702-5755
93	민간	재늘스배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오일장서길 41-3 [도두일동]	064-743-3515
94	민간	제원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오라로1길 34-7 [오라삼동]	064-749-1318
95	민간	제주시짜다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독짓골8길 3 [이도이동]	064-756-0396
96	민간	참여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매촌안길 4[도련이동]	064-723-2552

순번	유형	보육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97	민간	청록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고사마루길 55 [노형동]	064-711-3697
98	민간	초롱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다랑곶7길 9 [노형동]	064-747-1748
99	민간	큰숲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월산남2길 8 [노형동]	064-743-2002
100	민간	파란나라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오복1길 11-2 [이도이동]	064-757-1800
101	민간	파랑새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삼성로 16길 14 [일도이동]	064-755-0581
102	민간	한라어린이집	제주시 고마로 13길 22-1 [일도이동]	064-722-3290
103	민간	해달별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서사로 177-5 [오라일동]	064-724-8267
104	민간	해튼어린이집	제주시 우령6길 63 [외도일동]	064-742-5677
105	민간	해랑어린이집	제주시 월산남길 37-7 [노형동]	064-748-5628
106	민간	해선현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내도3길 4-5 [내도동]	064-743-5339
107	민간	해성어린이집	제주시 진군남 4길 15 [노형동]	064-742-3892
108	민간	해솔어린이집	제주시 진군남 4길 20 [노형동]	064-711-3892
109	민간	해원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동광로 16길 25 [일도이동]	064-727-5800
110	민간	힘찬어린이집(공공형)	제주시 원당로 30 [삼양일동]	064-722-7865
111	민간	안데르센어린이집	서귀포시 중동로 41-6 [서귀동]	064-763-4777
112	민간	용기종기어린이집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0번길 30-1 [동홍동]	064-762-0232
113	직장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청사람어린이집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이도이동]	064-727-5570
114	직장	제주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064-746-7557
115	직장	서귀포시청직장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064-760-3456

## ○ 유치원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연령	주소	연락처
1	노형초병설	2	4,5세반	제주시 노형로 383 [노형동]	064-740-8175
2	도련초병설	1	5세반	제주시 화삼로 104 [도련일동]	064-754-9592
3	동화초병설	1		제주시 동화로 1길 44 [화북이동]	064-729-5770
4	삼성초병설	1	4,5세반	제주시 서광로 29길 35 [이도일동]	064-720-0770
5	신광초병설	1	4,5세반	제주시 성신로 25 [연동]	064-741-0870
6	아라초병설	1	5세반	제주시 중앙로 518 [아라이동]	064-729-5922
7	월랑유치원	1		제주시 남녕로 63 [노형동]	064-717-8600
8	인화초병설	1	5세반	제주시 신산로 15길 35 [일도이동]	064-730-0975
9	제주남초병설	1	5세반	제주시 남성로 149 [삼도이동]	064-729-3790
10	제주동초병설	1	3,4,5세반	제주시 동문로 65 [건입동]	064-754-0600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연령	주소	연락처
11	제주서초병설	1	4,5세반	제주시 성화로 6길 51 (용담이동)	064-720-7396
12	제주중앙초병설	1	4,5세반	제주시 서사로 18길 409 (삼도일동)	064-720-3892
13	한림초병설	1	3세반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길 16 (한림리)	064-797-3070
14	해안초병설	1		제주시 해안마을길 76 (해안동)	064-717-8600
15	서귀중앙초병설	2		서귀포시 중동로 8번길 8 (서귀동)	064-731-6276, 6269
16	서귀포초병설	1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서귀동)	064-735-4272
17	표선초병설	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표선리)	064-786-4884

### ○ 초등학교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주소	연락처
1	고산초	1	제주시 고산로 1길 16 (고산리)	064-793-1800
2	광령초	1	제주시 광성로 276 (광령리)	064-731-1703
3	광양초	1	제주시 돈내길 5 (이도일동)	064-754-6900
4	교대부설초	1	제주시 일주동로 61 (화북일동)	064-755-0051
5	구엄초	1	제주시 일주서로 6768 (구엄리)	064-797-8700
6	김녕초	1	제주시 김녕로 117 (김녕리)	064-780-4202
7	남광초	2	제주시 남광로 28 (이도이동)	064-754-7500
8	노형초	3	제주시 노형로 383 (노형동)	064-740-8400
9	도남초	2	제주시 도남로 8길 22 (이도이동)	064-728-0703
10	도련초	3	제주시 화삼로 104 (도련일동)	064-754-9500
11	도리초	1	제주시 도리로 129 (도두일동)	064-717-4601
12	도평초	2	제주시 도평길 17 (도평동)	064-740-0100
13	동광초	3	제주시 태성로 6 (일도이동)	064-729-5800
14	동화초	2	제주시 동화로 1길 44 (화북일동)	064-729-5700
15	백록초	1	제주시 정존5길 62 (노형동)	064-754-1600
16	봉개초	1	제주시 번영로 484 (봉개동)	064-720-6800
17	삼성초	3	제주시 서광로 29길 35 (이도일동)	064-720-0700
18	삼양초	2	제주시 지석14길 7 (삼양이동)	064-729-6800
19	삼화초	2	제주시 화삼북로 2길 27 (화북일동)	064-750-3402
20	수원초	1	제주시 한림로 822 (대림리)	064-797-3100
21	신광초	2	제주시 성신로 25 (연동)	064-741-0800
22	신제주초	2	제주시 비월길 29 (연동)	064-741-6100
23	아라초	4	제주시 중앙로 518 (아라일동)	064-729-5900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주소	연락처
24	매월초	1	제주시 매월읍 매월로 139-10 (매월리)	064-795-8904
25	영평초	2	제주시 아봉로 225 (영평동)	064-750-5400
26	오라초	2	제주시 연사길 48 (오라이동)	064-720-4400
27	외도초	2	제주시 일주서로 7368 (외도이동)	064-717-5500
28	우도초	1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연평리)	064-786-4504
29	월랑초	2	제주시 남녕로 63 (노형동)	064-717-3571
30	이도초	2	제주시 구남동 2길 58 (이도이동)	064-754-5203
31	인화초	3	제주시 신산로 15길 35 (일도이동)	064-730-0902
32	일도초	2	제주시 삼성로 9길 27 (일도이동)	064-750-2915
33	재룡초	2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협재리)	064-795-5702
34	제주남초	1	제주시 남성로 149 (삼도이동)	064-729-3702
35	제주동초	2	제주시 동문로 65 (건입동)	064-754-0505
36	제주북초	2	제주시 중앙로 8길 18 (삼도이동)	064-717-3340
37	제주서초	2	제주시 성화로 6길 51 (용담이동)	064-720-7300
38	제주중앙초	1	제주시 서사로 18길 40 (삼도일동)	064-729-3800
39	조천초	2	제주시 신복로 195 (조천리)	064-783-4703
40	추자초	1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대서리)	064-742-8633
41	하귀일초	2	제주시 하귀9길 42 (하귀리)	064-795-0800
42	하귀초	2	제주시 하귀로 44 (하귀2리)	064-713-5449
43	한라초	2	제주시 연화로 42 (노형동)	064-740-9500
44	한림초	2	제주시 한림로 4길 16 (한림리)	064-797-3004
45	한천초	1	제주시 남성로 11길 22 (용담일동)	064-750-7380
46	함덕초	2	제주시 일주동로 1231 (함덕리)	064-780-4500
47	화북초	2	제주시 일주동로 157 (화북일동)	064-720-7500
48	남원초	1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7 (남원리)	064-766-4175
49	대정초	2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로 15 (상모리)	064-786-0770
50	동남초	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고성리)	064-786-5810
51	동홍초	1	서귀포시 동홍북로 17 (동홍동)	064-730-7572
52	보목초	1	서귀포시 마소물로 8번길 9 (보목동)	064-735-3574
53	보성초	1	서귀포시 추사로 55번길 6-1 (보성리)	064-797-3394
54	새서귀초	1	서귀포시 신서귀로 76번길 6-3 (서호동)	064-730-0771
55	서귀북초	2	서귀포시 중앙로 175 (서홍동)	064-760-0369,0370
56	서귀서초	2	서귀포시 서홍동 372	064-766-1773,1783
57	서귀중앙초	3	서귀포시 동문동로 54 (서귀동)	064-731-6216~7, 6310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주소	연락처
58	서귀포초	1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서귀동)	064-735-4219
59	서호초	2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호근동)	064-766-3566~7
60	시흥초	1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시흥리)	064-731-6772
61	안덕초	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56번길 32 (화순리)	064-797-6363~4
62	위미초	2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위미리)	064-760-0206~7
63	중문초	2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중문동)	064-730-5681, 5626
64	토평초	1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토평동)	064-735-4718
65	표선초	2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표선리)	064-787-4891~1
66	효돈초	1	서귀포시 효돈로 161 (신효동)	064-760-1883

## ○ 중학교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주소	연락처
1	사대부중	2	제주시 용담로 7길 33 (용담삼동)	064-754-6200
2	제주중앙중	1	제주시 선덕로 5길 37 (연동)	064-728-0806
3	제주중앙여중	2	제주시 서사로 11길 8 (삼도이동)	064-710-9700
4	제주동중	2	제주시 동화로 12-1 (화북일동)	064-741-0100
5	제주서중	2	제주시 일주서로 7811 (연동)	064-754-8400
6	아라중	2	제주시 간월동로 30 (아라이동)	064-750-6700
7	한라중	2	제주시 과원북2길 24 (노형동)	064-766-3200
8	탐라중	3	제주시 신설로 56 (아라이동)	064-754-5071
9	노형중	2	제주시 노형1길 28 (노형동)	064-740-8901
10	신업중	1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11 (신업리)	064-798-7900
11	애월중	1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5길 8 (애월리)	064-740-0700
12	한림중	1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21 (동명리)	064-797-7141
13	조천중	1	제주시 조천읍 신복로 31 (신촌리)	064-780-0717
14	함덕중	1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4 (함덕리)	064-780-5802
15	세화중	1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세화리)	064-786-5754
16	오름중	2	제주시 화삼북로 110 (도련일동)	064-754-9400
17	한림여중	1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04 (한림리)	064-795-0200
18	남원중	1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36 (남원리)	064-766-7505
19	대정중	1	서귀포시 대정읍 비행장로 18 (하모리)	064-798-0778
20	서귀중앙여중	2	서귀포시 중앙로 120 (동홍동)	064-730-5165, 5182
21	서귀포대신중	1	서귀포시 신중로 13번길 15 (강정동)	064-735-4641

순번	학교명	특수학급 수	주소	연락처
22	서귀포중	3	서귀포시 태평로 474 (서귀동)	064-730-7970~1, 7993
23	성산중	1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16 (고성리)	064-780-2961
24	안덕중	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 (화순리)	064-735-7761, 7763
25	위미중	1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상원북로 34 (위미리)	064-797-7371
26	중문중	1	서귀포시 천제연로 232번길 10 (중문동)	064-766-0164
27	표선중	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표선리)	064-780-7456
28	효돈중	1	서귀포시 효돈로 207 (하효동)	064-730-0208

## 2 주요기관 연락처

### ○ 시·도청

순번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대표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064-710-2832
2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064-728-2529
3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064-760-2391

### ○ 주민센터(읍·면·동)

관할구역	주소	대표번호
한림읍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한림리)	064-728-1521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 (애월리)	064-728-1522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세화리)	064-728-1523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 신복로 194 (조천리)	064-728-1524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84 (신창리)	064-728-1525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대서리)	064-728-1526
제주시 우도면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서광리)	064-728-1527
일도1동	제주시 중앙로7길 15 (일도일동)	064-728-1528
일도2동	제주시 삼성로 145 (일도이동)	064-728-1529
이도1동	제주시 중앙로25길 17 (이도일동)	064-728-1530
이도2동	제주시 오복3길 8 (이도이동)	064-728-1531
삼도1동	제주시 서사로14길 16 (삼도일동)	064-728-1532
삼도2동	제주시 관덕로6길 15 (삼도이동)	064-728-1533

	관할구역	주소	대표번호	
제주시	용담1동	제주시 용남3길 11 (용담일동)	064-728-1534	
	용담2동	제주시 흥운길 27 (용담이동)	064-728-1535	
	건입동	제주시 만덕로 18 (건입동)	064-728-1536	
	화북동	제주시 진남로 6길 17 (화북일동)	064-728-1537	
	삼양동	제주시 지석 13길 6 (삼양이동)	064-728-1538	
	봉개동	제주시 봉개북1길 15 (봉개동)	064-728-1539	
	아라동	제주시 인다8길 5 (아라일동)	064-728-1540	
	오라동	제주시 오라로10길 6 (오라이동)	064-728-1541	
	연동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064-728-1542	
	노형동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	064-728-1543	
	외도동	제주시 일주서로 7350 (외도이동)	064-728-1544	
	이호동	제주시 백포서길 9 (이호일동)	064-728-1545	
	도두동	제주시 도두길 9-1 (도두일동)	064-728-1546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하모리)	064-760-4011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5 (남원리)	064-764-3001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고성리)	064-760-4211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74 (화순리)	064-760-4311
표선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표선리)	064-760-4411	
송산동		서귀포시 소암로 4 (서귀동)	064-760-4501	
정방동		서귀포시 태평로 421번길 7 (서귀동)	064-760-4531	
중앙동		서귀포시 동문로 39 (서귀동)	064-760-4561	
천지동		서귀포시 중정로 47번길 3 (서귀동)	064-760-4591	
효돈동		서귀포시 남선동산로 26 (하효동)	064-767-1535	
영천동		서귀포시 토평로 15 (토평동)	064-760-4651	
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로 104 (동홍동)	064-760-4681	
서홍동		서귀포시 중앙로 125 (서홍동)	064-760-4721	
대륜동		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 (법환동)	064-760-4751	
대천동		서귀포시 도순로 44 (도순동)	064-760-4781	
중문동		서귀포시 1100로 30 (중문동)	064-760-4811	
예래동		서귀포시 예래로 67 (상예동)	064-760-1542	

##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순번	구분	주소	대표번호	
1	보건소	제주시제주보건소	제주시 연삼로 264 (이도이동)	064-728-4010
2	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4길 6 (김녕리)	064-728-4202
3	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홍동)	064-733-4000
4	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남원리)	064-764-1856
5	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한림리)	064-728-4114
6	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5번길 12 (하모리)	064-760-6251
7	보건진료소	광령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304 (광령리)	064-728-7320
8	보건진료소	대흘보건진료소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45 (대흘리)	064-728-7306
9	보건진료소	고성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61-2 (고성리)	064-728-7319
10	보건진료소	교래보건진료소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52 (교래리)	064-728-7305
11	보건진료소	유수암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4-2 (유수암리)	064-728-7318
12	보건진료소	장전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353 (장전리)	064-728-7317
13	보건진료소	선흘1리보건진료소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10 (선흘리)	064-728-7307
14	보건진료소	선흘2리보건진료소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33 (선흘리)	064-728-7308
15	보건진료소	상가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애상로 226 (상가리)	064-728-7316
16	보건진료소	납읍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519 (납읍리)	064-728-7315
17	보건진료소	덕천보건진료소	제주시 구좌읍 덕평로 325-3 (덕천리)	064-728-7302
18	보건진료소	송당보건진료소	제주시 구좌읍 송당서1길 4 (송당리)	064-728-7303
19	보건진료소	신례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36-1 (신례리)	064-760-6371
20	보건진료소	봉성보건진료소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6 (봉성리)	064-728-7314
21	보건진료소	한남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420번길 13 (한남리)	064-760-6372
22	보건진료소	의귀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1 (의귀리)	064-764-3433
23	보건진료소	가시보건진료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56-1 (가시리)	064-787-1293
24	보건진료소	신흥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774 (신흥리)	064-764-2733
25	보건진료소	성읍보건진료소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88-10 (성읍리)	064-760-6377
26	보건진료소	토산보건진료소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61 (토산리)	064-787-1800
27	보건진료소	금악보건진료소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1길 1 (금악리)	064-728-7311

순번	구분	주소	대표번호
28	보건진료소	상창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145번길 11 [상창리]	064-760-6393
29	보건진료소	세화보건진료소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302-1 (세화리)	064-787-3107
30	보건진료소	상명보건진료소 제주시 한림읍 상명1길 22 [상명리]	064-728-7312
31	보건진료소	서광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11 [서광리]	064-760-6391
32	보건진료소	신흥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192번길 40 [신흥리]	064-760-6379
33	보건진료소	삼달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15 [삼달리]	064-760-6381
34	보건진료소	비양보건진료소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길 4 [협재리]	064-728-7313
35	보건진료소	저지보건진료소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99 [저지리]	064-728-7322
36	보건진료소	서광서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2118 [서광리]	064-760-6392
37	보건진료소	대평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감산로 19 [창천리]	064-760-6394
38	보건진료소	난산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8 [난산리]	064-782-4176
39	보건진료소	수산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서남로 17-1 [수산리]	064-760-6383
40	보건진료소	하도보건진료소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413 [하도리]	064-728-7304
41	보건진료소	신산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111번길 21-12 [신산리]	064-760-6380
42	보건진료소	조수보건진료소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468 [조수리]	064-728-7321
43	보건진료소	온평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애향로23번길 6 [온평리]	064-760-6112
44	보건진료소	신평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600 [신평리]	064-760-6387
45	보건진료소	산양보건진료소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12 [청수리]	064-728-7325
46	보건진료소	사계보건진료소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9 [사계리]	064-760-6390
47	보건진료소	청수보건진료소 제주시 한경면 청수로 50 [청수리]	064-728-7323
48	보건진료소	무릉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77 [무릉리]	064-760-6388
49	보건진료소	용수보건진료소 제주시 한경면 용수길 73 [용수리]	064-728-7324
50	보건진료소	신도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37 [신도리]	064-760-6386
51	보건진료소	가파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30 [가파리]	064-760-6384
52	보건진료소	마라보건진료소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101번길 22 [가파리]	064-760-6385
53	보건진료소	제주시하추자보건진료소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87 [신양리]	064-742-8014
54	보건지소	조천보건지소 제주시 조천읍 신복로 264 [조천리]	064-783-6249
55	보건지소	애월보건지소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67 [애월리]	064-728-8923
56	보건지소	중문보건지소 서귀포시 천제연로 277 [중문동]	064-760-6061

순번	구분	주소	대표번호
57	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1 [강정동]	064-760-6001
58	보건지소	구좌보건지소 제주시 구좌읍 세화2길 9 [세화리]	064-728-1517
59	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21 [표선리]	064-787-1304
60	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12번길 30-9 [화순리]	064-794-9101
61	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2 [고성리]	064-782-2368
62	보건지소	한경보건지소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18-2 [두모리]	064-728-8935
63	보건지소	우도보건지소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연평리]	064-783-0279
64	보건지소	제주시제주보건소 추자지소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86 [영흥리]	064-728-1519

## ○ 공공기관

순번	기관명	주소	대표번호
1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청사로 3길 11-1 [이도이동]	064-720-4005
2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서귀포시축산농협 5층 [동홍동]	064-800-455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시 중앙로 353 [이도이동]	1577-1000
4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38 [강정동]	1577-1000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제주시 동광로 30 [이도이동]	064-710-5010

### 3 주요기관 연락처 - 장애인

#### ○ 장애인복지관

순번	기관명	주소	대표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516로 3120 (아라일동)	064-702-0295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6길 27-18 (김녕리)	064-782-0295
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064-710-9990
4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 아봉로 433 (월평동)	064-721-4440
5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외도일동)	064-711-9094
6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토평동)	064-735-2600
7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3 (화순리)	064-792-2601
8	우리복지관	제주시 산천단남길 40 (아라일동)	064-758-7942

#### ○ 장애인단체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사]장애인지원협의회	제주시 도령로 25, 4층 (노형동)	064-805-9688
2	[사]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3층 (이도일동)	064-756-8333
3	[사]한국농아인협회 협회 제주시지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3층 301호 (이도일동)	064-757-2120
4	[사]한국농아인협회 협회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남성중로 130 (서흥동)	064-733-6810
5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서귀포시장래인회관 5층 (서귀동)	064-733-3123
6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4층 (이도일동)	064-757-9897
7	다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조천읍 우진오름길 34 (선흘리)	064-758-0877
8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천수로 52, 2층 (일도이동)	070-8900-9667
9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5층 (이도일동)	064-743-3920
10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501호 (이도일동)	064-758-0877
11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서광로27길 16, 503호 (이도일동)	064-751-7588
12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제주시 용화로 22-4 (용담이동)	064-711-0086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3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제주시 기와5길 115 (화북이동)	064-725-9930
14	사회복지법인 춘강	제주시 516로 3120-1 (아라일동)	064-702-7851
15	사회복지법인 희열	제주시 원노형로 102 한화아파트 101동 104호 (노형동)	064-702-5440
16	사회적협동조합 로운	제주시 도남로10길 35-4 (이도이동)	064-756-0204
17	사회적협동조합 반디	제주시 월구길 17-15 (오라삼동)	064-702-7477
18	사회적협동조합 선우	제주시 우령로 28-2, 성광 1층 (노형동)	064-712-5180
19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제주시 구산동길 15 (아라일동)	010-9942-1246
20	서귀포시장래인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4층 (서귀동)	064-733-6611
21	서귀포시장래인보조기대여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3층 (서귀동)	064-762-1703
22	서귀포시장래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3층 (서귀동)	064-762-1700
23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현대빌딩 504호 (이도일동)	064-725-1911
24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	제주시 동광로 56, 2층 (이도이동)	064-723-7777
25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 도련6길 17-3, A동 5층 (도련일동)	064-722-1370
26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제주시 아봉로 433, 2층 (월평동)	064-726-9669
27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시 천수동로 30 (일도이동)	064-751-9102
28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시 천수동로 30, 2층 (일도이동)	064-751-8096
29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시 청사로 75, 4층 (이도일동)	064-751-9100
30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4층 (이도일동)	064-756-4980(2번)
31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제주시 천수동로 30, 2층 (일도이동)	1566-4669
32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연복로 33, KT&G제주본부 301호 (노형동)	064-803-3714
33	제주보조기기센터	제주시 아봉로 433, 2층 (월평동)	064-753-9997
34	서귀포시장래인부모회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4층 (서귀동)	064-733-0568
35	제주수어통역센터	제주시 동문로 125-1, 1층 (건입동)	064-743-3923
36	제주수어통역센터 서귀포시분소	서귀포시 남성중로 130, 서귀포시농아인협회 (서흥동)	064-767-3922
37	제주수어통역센터 제주시분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506호 (이도일동)	064-743-3922
38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시 중앙로 273, 나리키움 제주마루 1층 101호	064-900-9695
39	제주장애인부모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4층 405호 (이도일동)	064-725-1370
40	제주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주시 서광로27길 16, 현대빌딩 4층 405호 (이도일동)	064-702-1371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41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훈디누림터 2층 (이도일동)	064-753-3225
42	제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훈디누림터 4층 (이도일동)	064-726-3305
43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서귀포시장애인회관 4층 (서귀동)	064-764-3381
44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시지부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훈디누림터 4층 401호 (이도일동)	064-747-3305
45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4층 (이도일동)	064-756-4980
46	제주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제주시 인다6길 37 (아라일동)	064-759-4980
47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남성중로 130 (서흥동)	064-763-3890
4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훈디누림터 302호 (이도일동)	0507-1410-1192
4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제주시 서광로 27길 16, 5층 505호	064-751-1135
5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송산동)	064-733-3123
51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3층 (이도일동)	064-724-1197
52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5층 (서귀동)	064-733-1197
53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제주시지부	제주시 서광로27길 16, 3층 (이도일동)	064-726-1196
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제주시 동광로 30, 한화생명빌딩 5층 (이도이동)	064-717-6700
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제주시 동광로 30, 한화생명빌딩 3층 (이도이동)	064-907-5320
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시사	제주시 동광로 30 한화생명빌딩, 6층 (이도이동)	064-710-5010
57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064-756-4980
58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훈디누림터 404호 (이도일동)	064-752-8485
59	행복나눔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	서귀포시 정방로 16, 3층 (서귀동)	064-733-6733

## ○ 재활시설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길직업재활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상대리)	064-796-5777
2	아가금드래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함덕리)	064-783-9920
3	어울림터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6 (토평동)	064-732-0295
4	에코소랑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토평동)	064-732-2288
5	일배움터	제주시 기와5길 83 (화북이동)	064-723-9104
6	중증장애인지업재활시설 열린	제주시 은남1길 4 (연동)	064-752-2299
7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제주시 516로 3120-1 (아라일동)	064-702-7851
8	평화의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구억리)	064-794-6277
9	한라원장애인지업재활시설	제주시 매월읍 하소로 747-23 (유수암리)	064-799-9225
10	희망나래꿈터	제주시 구산동길 15, 지하층 (아라일동)	064-755-1246
11	희망나래일터	제주시 구산동길 15-1 (아라일동)	064-751-5152

## ○ 직업재활시설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길직업재활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상대리)	064-796-5777
2	아가금드래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함덕리)	064-783-9920
3	어울림터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6 (토평동)	064-732-0295
4	에코소랑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토평동)	064-732-2288
5	일배움터	제주시 기와5길 83 (화북이동)	064-723-9104
6	중증장애인지업재활시설 열린	제주시 은남1길 4 (연동)	064-752-2299
7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제주시 516로 3120-1 (아라일동)	064-702-7851
8	평화의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구억리)	064-794-6277
9	한라원장애인지업재활시설	제주시 매월읍 하소로 747-23 (유수암리)	064-799-9225
10	희망나래꿈터	제주시 구산동길 15, 지하 1층 (아라일동)	064-755-1246
11	희망나래일터	제주시 구산동길 15-1 (아라일동)	064-751-5152

## ○ 지역사회재활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나아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일주동로 360, 2층 (삼양이동)	064-755-0091
2	라운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오도9길 23 (이호이동)	064-744-2555
3	로온주간이용센터	제주시 도남로10길 35-4, 1층 (이도이동)	064-756-0205
4	반디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월귀길 17-15 (오라삼동)	064-702-7477
5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협회 부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조천읍 우진오름길 34 (선흘리)	064-758-0877
6	사회적협동조합 품에 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제주시 도련남길 104-12 (도련일동)	070-7585-7773
7	서귀포시각장애인지원센터	서귀포시 월평로 10 (월평동)	064-738-1111
8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326-7 (덕수리)	064-792-1471
9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8 (표선리)	064-787-2358
10	서부장애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14 (한림리)	064-796-8161
11	선정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우평로 28-2, 성광 1층 (노형동)	064-713-5180
12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5층 505호 (이도일동)	064-758-1114
13	신장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성화로7길 2, 1층 (용담이동)	064-751-1197
14	유진주간활동센터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 (해안동)	064-747-1371
15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주시 기와5길 81, 3층 (화북이동)	064-724-0999
16	제주시각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아봉로 433 (월평동)	064-721-4440
17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조천읍 북촌12길 76-5 (북촌리)	064-783-0928
18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연삼로 422, 새오름빌딩 3층 (이도이동)	064-901-4535
19	조은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서광로19길 4 (삼도일동)	064-755-9600
20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설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제주시 서광로27길 16, 제주현대빌딩 4층 (이도일동)	064-752-3306
21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설 서귀포시지부 부설 서귀포주간보호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상원북로24번길 104 (위미리)	064-764-3385
22	지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시 황사평6길 90-46 (화북이동)	064-721-7300
23	창암교육활동센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566-4 (광령리)	064-748-5544
24	천사나래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오라로1길 4 (오라삼동)	064-702-5441
25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내도7길 10, 101호 (내도동)	064-712-1633
26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돌담정당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94 (호근동)	064-738-0603
27	탐라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시 광양4길 32, 지하1층 (이도일동)	064-757-9910
28	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동홍북로51번길 24 (동홍동)	064-763-2357

순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29	한라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아연로 113-22 (오라이동)	064-742-0653
30	한솔주간활동센터	제주시 노연로 119 (연동)	064-746-3306
31	한울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지석4길 7 (삼양이동)	064-723-1791
32	해인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하신상로 410 (상효동)	064-732-7879
33	행복나눔장애인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동홍동로26번길 26 (동홍동)	064-733-6799
34	행복한심터	제주시 첨단로 20 3(영평동)	064-722-0915
35	희망나래활동센터	제주시 구산동길 15, 2층 (아라일동)	064-752-5151
36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색달로 131 (색달동)	064-739-3085

## 4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 ○ 장애인활동지원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7, 1층 126호 (한림리)	064-796-0875
	(사)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제주시 인다7길 4, 4층 (아라일동)	064-723-9963
	사회적협동조합 반디	제주시 월구 1길 17-15 (오라삼동)	064-702-7477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시 청사로 75, 4층 (이도일동)	064-751-910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시 도남로 199 (아라일동)	064-702-1370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제주시 인다6길 37 (아라일동)	064-759-4980
	참된장기요양기관	제주시 고마로 44, 2층 (일도이동)	064-723-1326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0-1 (이도일동)	064-710-9900
	하나노인복지센터	제주시 가령로 37, 1층 (이도이동)	064-900-3384
	힘찬노인복지센터	제주시 진남로 50 (화북일동)	064-721-0691
서귀포시	가족누리통합돌봄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인안성로 52-7 (안성리)	064-792-1484
	가족재활복지타운	서귀포시 대정읍 인안성로 52-7 (안성리)	064-792-7662
	봄날 그리고 햇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30, 1층 (오조리)	064-805-9460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서귀포시 서홍로 159-4 (서홍동)	064-732-2358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3층 (서귀동)	064-762-1700
	효원재가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 효돈로 199 (하효동)	064-767-3373

## ○ 정신건강심리상담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공감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연삼로 352, 2층 (이도이동)	064-759-0369	
	나나 임상심리연구소	제주시 수덕5길 81-6, 1층 (노형동)	010-2644-7097	
	내마음심리상담센터	제주시 국기로 32, 2층 (연동)	064-712-3690	
	마음과마음심리상담연구소	제주시 정실3길 106, 2층 (오라이동)	064-711-9161	
	마음바탕 심리검사센터	제주시 월랑로 6길 10, 2층 (노형동)	064-805-8358	
	마음의정원심리상담치유센터	제주시 수덕로 25, 관리동 3층 (노형동)	010-3473-5401	
	마주봄심리상담센터	제주시 대원길 58, 2층 (아라일동)	064-702-0237	
	모아심리상담센터	제주시 과원로 28, 2층 (연동)	010-4666-1471	
	블루토리심리상담센터 & 부모교육연구소 제주점	제주시 동광로 7길 14, 3층 (이도일동)	064-758-3714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	제주시 명림로 214-13 (봉개동)	064-753-2313	
	심리상담센터 이너프	제주시 진군길 1-8, 1층 (노형동)	070-7954-6103	
	심리치유공간마음대로	제주시 서광로 297, 2층 (이도일동)	064-725-3500	
	아고운심리상담센터	제주시 화삼북로 87, 상가동 104호 (삼양이동)	010-2875-5712	
	아름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우정로 26, 4층 (외도일동)	010-7917-7590	
	유진심리언어발달센터	제주시 신성로 10길 19, 301호 (이도이동)	064-723-3330	
	자유나래심리상담센터	제주시 과원북 4길 3, 302호 (노형동)	064-745-0970	
	제주공감심리상담센터	제주시 1100로 3324, 6층 (노형동)	064-749-5335	
	제주의망나루 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원노형2길 38, 503호 (노형동)	064-901-3223	
	지상의별처럼 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일주동로 380-1, 2-3층 (삼양이동)	010-7380-2328	
	지혜상담치료센터	제주시 독짓골 2길 10, 3층 (이도이동)	064-712-0009	
	최경희 상담클리닉	제주시 월대6길 19, 2층 (외도이동)	064-783-1388	
	한국재활심리치료센터	제주시 동광로 131, 7층 702호 (일도이동)	064-722-8479	
	한라상담심리지원센터	제주시 동광로 1길 11, 지하층 (이도일동)	064-757-0755	
	함께하는 심리상담센터	제주시 동광로 137, 401호 (일도이동)	064-783-0675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	제주시 가령로 4길 7, 1-2층 (이도이동)	064-723-1247	
	휴모루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신선동길 3-1, 1층 (일도이동)	064-759-3400	
	서귀포시	다운심리상담연구소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36, C동 403호 (구억리)	064-794-1992
		마음사랑미술심리연구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6번길 14, 2층 (동홍동)	064-732-3320
		제주임상심리연구소	서귀포시 중정로 56-1 (서귀동)	064-762-1279

## ○ 발달재활서비스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경희언어발달교육센터	제주시 일주동로 214, 3층 (화북일동)	064-756-1010
	고유경	제주시 사평4길 19, 206호 (오라이동)	064-748-4877
	공간 언어심리발달센터	제주시 월랑로 35, 3층 (노형동)	010-3074-4785
	김수희 아동발달지원센터	제주시 국기로 1길 27, 1층 (연동)	064-712-5995
	나래언어심리발달센터	제주시 연삼로 305, 3층 (이도이동)	064-725-0710
	나아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일주동로 360, 2층 (삼양이동)	064-755-0091
	낮은올타리 아동지원센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인수물남길 20-1, 가동 (신촌리)	064-782-7727
	누리아동발달센터	제주시 서광로 241, 2층 (삼도일동)	064-759-9249
	늘품제주언어심리교육센터	제주시 동광로 50-1, 4층 (이도이동)	064-722-3977
	달렘 언어심리지원센터	제주시 남광로 115 (일도이동)	064-724-5568
	더 아이다움 심리발달센터	제주시 우정로 8길 17, 4층 (외도일동)	064-743-3625
	더이름 심리상담센터 주식회사	제주시 중앙로 299, 402호 (이도이동)	064-805-7756
	동그라미교육원	제주시 중앙로 541, 2층 (아라일동)	064-712-1480
	디딤심리발달센터	제주시 동광로 77, 3층 (일도이동)	064-803-0779
	라온제나 음악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2길 49-6 (이도이동)	070-7747-5450
	라임언어학습연구소	제주시 1100로 3308, A동 904호 (노형동)	064-711-8585
	마음공간, 지	제주시 건주로 4길 6-8, 303호 (도련일동)	064-757-1697
	맘노리터아동발달클리닉	제주시 연사2길 29, 1층 (오라이동)	064-745-0006
	비영리법인단체 헤아림	제주시 삼봉로 85, 2층 (도련이동)	064-725-7766
	사단법인희망나눔아이캔	제주시 노연로 43, 5층 (노형동)	064-747-1388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별	제주시 연삼로 372, 2층 (이도이동)	064-745-2647
	삼화 해인 언어심리지원센터	제주시 동화로1길 49-9, 1층 (화북일동)	064-723-5995
	셋별공간언어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아란7길 24, 2층 201호 (아라일동)	064-757-6890
	세화언어심리지원센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4길 13, 1층 (세화리)	064-782-9936
	소리누리언어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오복4길 8 (이도이동)	064-702-2636
	안녕바오밥임상센터	제주시 연복로 705, 2층 (이도이동)	064-753-3117
	언어심리학습클리닉 마음더하기	제주시 아란11길 9-1 (아라이동)	064-752-5055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	제주시 달마루길 20-3, 2층 (노형동)	064-748-8113
	유앤미발달센터	제주시 아란2길 25, 1층 (아라일동)	064-755-4113
	유앤아이음악치료클리닉	제주시 월광로 25, 2층 202호 (노형동)	064-747-4613
	유진심리언어발달센터	제주시 신성로 10길 19, 301호 (이도이동)	064-723-3330
	윤사랑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우정로 8길 37 (외도일동)	064-712-902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임언어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진군남4길 2-3, 1층 (노형동)	064-748-3566
	임언어치료클리닉	제주시 월랑북1길 6-6 (노형동)	064-746-3566
	제주언어클리닉	제주시 고마로 104, 2층 (일도이동)	064-723-9936
	존샘가족성장지원센터	제주시 월산북길 64-8, 1층 (노형동)	064-749-6069
	주)같이이룸 언어발달심리상담센터	제주시 간월동로 14-1, 1층 (아라이동)	064-722-3226
	주식회사 도담	제주시 정존15길 5, 2층 (노형동)	064-745-1919
	주식회사 도담 이도점	제주시 서광로 29길 38, 306호 (이도일동)	064-745-1919
	주현숙언어심리연구소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11길 25, 1층 (노형동)	064-744-8855
	참고운말언어치료실주식회사	제주시 우정로 34, 4층 (외도일동)	064-742-3955
	참나리센터 제주지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지하층 3005, 3006호 (광령리)	070-4548-8737
	채움통합발달센터	제주시 광평중길 14, 1층 (노형동)	064-711-758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064-710-9900
	평생교육센터 향기로운	제주시 애월읍 광령3길 9, 1층 (광령리)	064-746-1110
	하음에듀	제주시 월두2길 63-1, 3층 (아라이동)	064-725-5600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제주시 동광로 131, 7층 702호 (일도이동)	064-722-8479
	한국재활심리치료센터	제주시 동광로 131, 7층 702호 (일도이동)	064-722-8479
	한라교육원 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아연로 113-22, 2층 (오라이동)	064-744-0653
	함께걸음협동조합 영평점	제주시 영평길 274, 201호 (영평동)	064-748-1129
	해냄언어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신설로 2길 2, 101호 (이도이동)	064-751-7574
	햇살발달치료센터	제주시 선덕로 8길 32-1, 1층 (연동)	064-751-8133
행복나무발달지원센터	제주시 고마로 11길 51, 1층 (일도이동)	064-805-9772	
휘파람발달지원센터	제주시 고마로 40, 3층 (일도이동)	010-2800-6958	
서귀포시	마음사랑발달재활센터	서귀포시 동홍서로 112번길 16-8 (동홍동)	064-733-7504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서귀포시 새왓로 20, 2층 (서호동)	064-738-7579
	반짝반짝 작은별 발달지원센터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0번길 4-8, 2층 (동홍동)	010-8502-0501
	발달재활센터 아이꿈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63, 1층 (상모리)	064-792-7576
	빅트리마음센터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58번길 6, 4층 (표선리)	064-747-0108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토평동)	064-735-2681
	손기옥언어발달상담센터	서귀포시 태평로 414 (서귀동)	064-767-7575
	웃음꽃심리상담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3, 3층 (남원리)	064-764-0220
	위드운동발달센터	서귀포시 신서로52번길 23 (강정동)	064-738-0933
	이룸발달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17번길 2, 4층 (서홍동)	064-762-2627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귀포시	이룸발달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17번길 2, 4층 (서홍동)	064-762-2627
	재활&상담 프로보노	서귀포시 동문동로 53번길 5, 201호 (서귀동)	064-733-8875
	표선언어학습연구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27-7 (표선리)	064-787-2704
	꿈 감각통합 발달센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신항로 18, 1층 (사계리)	064-904-1177
	하이지음 통합발달지원센터	서귀포시 서홍로 210 (서홍동)	010-5930-8322
	휴심리상담센터	서귀포시 동홍북로 27-14, 4층 (동홍동)	064-733-2442

## ○ 언어발달지원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제주언어클리닉	제주시 고마로 104, 2층 (일도이동)	064-723-9936	
	마음사랑발달재활센터	서귀포시 동홍서로 112번길 16-8 (동홍동)	064-733-7504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서귀포시 새왓로 20, 2층 (서호동)	064-738-7579	
	반짝반짝 작은별 발달지원센터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0번길 4-8, 2층 (동홍동)	010-8502-0501	
	발달재활센터 아이꿈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63, 1층 (상모리)	064-792-7576	
	빅트리마음센터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58번길 6, 4층 (표선리)	064-747-0108	
	서귀포시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토평동)	064-735-2681
		손기옥언어발달상담센터	서귀포시 태평로 414 (서귀동)	064-767-7575
		웃음꽃심리상담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3, 3층 (남원리)	064-764-0220
		위드운동발달센터	서귀포시 신서로52번길 23 (강정동)	064-738-0933
이룸발달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17번길 2, 4층 (서홍동)	064-762-2627	
표선언어학습연구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27-7 (표선리)	064-787-2704	
서귀포시	하이지음 통합발달지원센터	서귀포시 서홍로 210 (서홍동)	010-5930-8322	
	휴심리상담센터	서귀포시 동홍북로 27-14, 4층 (동홍동)	064-733-2442	

###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김수희 아동발달지원센터	제주시 국기로1길 27 (연동)	064-712-5995
	동행 심리지원연구소	제주시 국기로2길 26 (연동)	064-747-4936
	소리누리언어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오복4길 8 (이도이동)	064-702-2636
	안녕바오밥임상센터	제주시 연북로 705, 2층 (이도이동)	064-753-3117
	한국재활심리치료센터	제주시 동광로 131, 7층 702호 (일도이동)	064-722-8479
	협동조합마음온심리상담센터	제주시 가령로 4길 7, 1-2층 (이도이동)	064-723-1247
	휴모루심리상담센터	제주시 신선동길 3-1, 1층 (일도이동)	064-759-3400
서귀포시	발달재활센터 아이꿈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63, 1층 (상모리)	064-792-7576
	해송심리상담연구소	서귀포시 동홍로 90번길 11 (동홍동)	064-732-2279

###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나야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일주동로 360, 2층 (삼양이동)	064-755-0091
	별난고양이꿈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천수로 52, 2층 (일도이동)	070-8900-9667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별	제주시 연삼로 372, 2층 (이도이동)	064-745-264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시 도남로 199 (아라일동)	064-702-1370
	주)영림언어평생 교육지원연구소 연동지점	제주시 노연로 43, 5층 (노형동)	064-745-2467
	참나리센터 제주지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지하층 3005, 3006호 (광령리)	070-4548-8737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 4길 30-1 (이도일동)	064-710-9900
	한국재활daycare센터	제주시 신성로 12길 23, 2층 (이도이동)	064-725-8278
	발달재활센터 아이꿈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63, 1층 (상모리)	064-792-7576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3층 (서귀동)	064-762-1700
서귀포시	에스겔발달지원센터	서귀포시 신서로 48번길 22, 2층 (강정동)	064-738-8512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3층 (서귀동)	064-764-3381

### ○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별난고양이꿈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천수로 52, 2층 (일도이동)	070-8900-9667
	사회적협동조합 반디	제주시 월구 1길 17-15 (오라삼동)	064-702-7477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별	제주시 연삼로 372, 2층 (이도이동)	064-745-2647
	임언어발달지원센터	제주시 진군남4길 2-3, 1층 (노형동)	064-748-3566
	주)영림언어평생교육지원연구소 연동지점	제주시 노연로 43, 5층 (노형동)	064-745-2467
	주식회사 도담 이도점	제주시 서광로 29길 38, 306호 (이도일동)	064-745-1919
	주현숙언어심리연구소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11길 25, 1층 (노형동)	064-744-8855
	참나리센터 제주지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지하층 3005, 3006호 (광령리)	070-4548-8737
	한국재활daycare센터	제주시 신성로 12길 23, 2층 (이도이동)	064-725-8278
	서귀포시	발달재활센터 아이꿈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63, 1층(상모리)
에스겔발달지원센터		서귀포시 신서로 48번길 22, 2층 (강정동)	064-738-8512

### ○ 최종증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사회적협동조합 나야	제주시 정실3길 76 (오라이동)	064-722-0645
	선정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우평로 28-2 (노형동)	064-713-5180
	한울주간활동센터	제주시 매촌서2길 11-2 (도련이동)	064-723-1791
	희망나래활동센터	제주시 구산동길 15 (아라일동)	064-752-5151

### ○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24시 안마원	제주시 서광로 20길 7 (삼도일동)	064-723-5339
	3927 만나지압원	제주시 서광로 230 (삼도일동)	010-3692-9824
	건강드림안마원	제주시 도령로 31, 2층 203호 (노형동)	064-743-1159
	건강제주안마지압원	제주시 선덕로 18, 5층 (연동)	064-744-9633
	꽃자왈지압안마원	제주시 노연로 117, 2층 (연동)	064-746-2737
	나이스안마원	제주시 중앙로 284, 2층 (이도이동)	064-725-6226
	뉴제주안마원	제주시 도령로 140, 2층 201호 (연동, 삼무스위트빌)	064-747-8833
	다비다안마원	제주시 연삼로 29-1, 2층 (연동)	064-712-6612
	달인안마원	제주시 오복1길 24-7 (이도이동)	010-2334-2820
	대체안마원	제주시 귀아랑1길 3 (연동)	064-749-2929



발행일 2026년 03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발행인 센터장 최준환  
주소 6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전화 tel. 064-717-2720 fax. 064-717-2721  
홈페이지 www.jrhmc.co.kr  
인스타그램 jejuhmfordisable  
디자인 디자인북나리 064-756-5251